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책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whatsnew.moef.go.kr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7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9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11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2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13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기획재정부) 14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15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6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17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8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19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2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21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 22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23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4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25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26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기획재정부) 27
-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28
-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29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3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31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 32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3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기획재정부) 34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35
-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36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37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국세청) 38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국세청) 39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40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41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42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44

02 교육·보육·가족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교육부) 49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51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52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건복지부) 53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54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보건복지부) 55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56

03 국방·병무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61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국방부) 62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방부) 63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국방부) 64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국방부) 65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국방부) 66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국방부) 67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국방부) 68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69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국가보훈처) 70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71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 72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병무청) 73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74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병무청) 75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76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무청) 77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병무청) 78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병무청) 79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80
-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방위사업청) 81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방위사업청) 82

04 행정·안전·질서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외교부) 93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외교부) 94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통일부) 95
-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통일부) 96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97
- 국가송무체계 개선 (법무부) 99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 100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법무부) 101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법무부) 102
-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법무부) 103
-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법무부) 104
-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법무부) 105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행정안전부) 106
- 청년마을 조성 확대 (행정안전부) 107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108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109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110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행정안전부) 111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행정안전부) 112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1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114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안전부) 115
- 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청사" 조성 (행정안전부) 116
-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행정안전부) 117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8
-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9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120
-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121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인사혁신처) 122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인사혁신처) 123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인사혁신처) 124
-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법제처) 125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조달청) 126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경찰청) 127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128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경찰청) 129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경찰청) 130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소방청) 131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소방청) 132
-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133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134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135
-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136

05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38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139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재청) 140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문화재청) 141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142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문화재청) 14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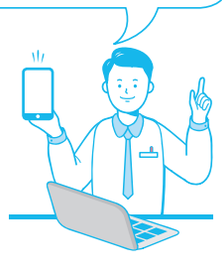

06 농림·수산·식품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55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156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157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58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59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60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61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62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63
-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64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65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66
-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67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68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69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0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1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2
-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3
-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4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75
-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176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77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78
-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 179
-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180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해양수산부) 181
-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182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해양수산부) 183
-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184
-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185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186
-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해양수산부) 187
-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188
-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 189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해양수산부) 190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해양수산부) 191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해양수산부) 192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193
-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94
-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95
-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해양수산부) 196
-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해양수산부) 197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해양수산부) 198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199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200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201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해양수산부) 202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203
-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해양수산부) 204
- 해양환경교육 확대 (해양수산부) 205
- 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해양수산부) 206
-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 207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해양수산부) 208
- "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농촌진흥청) 209

07 환경·기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환경부) 214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환경부) 215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216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환경부) 217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218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환경부) 219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부) 220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부) 221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환경부) 222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223
- 상수도 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 224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환경부) 225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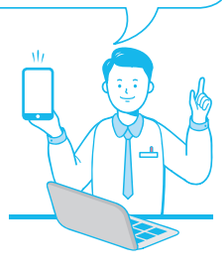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226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환경부) 227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부) 228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환경부) 229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상청) 230
-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상청) 231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7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8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9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41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42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43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244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245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46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247
-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248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49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250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251
-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252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특허청) 253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특허청) 254
-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255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특허청) 256
-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특허청) 257
-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 258
-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특허청) 259
-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특허청) 260
-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특허청) 261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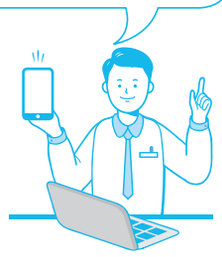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09 보건·복지·고용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73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74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75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276
-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 277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보건복지부) 278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보건복지부) 279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280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281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282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 283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보건복지부) 28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285
-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286
-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287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288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보건복지부) 289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290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91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292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293
-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보건복지부) 294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295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296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297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298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299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301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02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303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304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30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306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307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308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09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3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311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고용노동부) 312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313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314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국토교통부) 315
-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316
-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318
-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320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321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322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323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국세청) 324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질병관리청) 325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질병관리청) 326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질병관리청) 327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질병관리청) 328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질병관리청) 329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질병관리청) 330
-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질병관리청) 331

10 국토·교통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335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336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337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338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33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7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9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11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12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3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14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15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16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17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18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9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2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21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22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23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24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25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26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27
- 증권거래세율 인하 28
-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9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31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32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33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34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35

교육부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49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51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237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238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239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240

외교부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93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94

통일부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95
-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96

법무부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97
- 국가송무체계 개선 99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100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101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102
-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103
-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104
-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105

국방부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61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62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63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64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65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66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67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68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69

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106
- 청년마을 조성 확대 107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108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109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110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111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112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1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114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15
- 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청사" 조성 116
-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117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36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138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13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18
-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119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155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156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157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158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159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160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161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162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163
-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164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165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166
-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67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168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169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170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71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172
-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173
-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174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175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273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274

산업통상자원부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241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242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243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244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245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246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247
-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248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53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54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55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275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276
- 기초연금 지급 확대 277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278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279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280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281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282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283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28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285
-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286
-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287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288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289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290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91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292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293
-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294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295

환경부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214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15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216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217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218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219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220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221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222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223
- 상수도 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224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225
-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226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227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228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229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96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97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98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99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301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302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303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304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30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306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307
- 최저임금액 인상 308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309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3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311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312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31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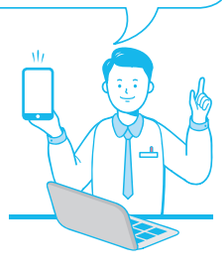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56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120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314

국토교통부

-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121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315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335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336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337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338

해양수산부

-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176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177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178
-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179
-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180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181
-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182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183
-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184
-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185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186
-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187
-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188
-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189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190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191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192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193
-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194

-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195
-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196
-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197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198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199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200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201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02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203
-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204
- 해양환경교육 확대 205
- 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206
-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207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208

중소벤처기업부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249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250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251
-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252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70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122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123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12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125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316
-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318
-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320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321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322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23

국세청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37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38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39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40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41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324

조달청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126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71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72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73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74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75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76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77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78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79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80

방위사업청

-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81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82

경찰청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127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128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129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130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131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132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40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141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142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143

농촌진흥청

- "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209

산림청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339

특허청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253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254
-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255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256
-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257
-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258
-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259
-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260
-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261

질병관리청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325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326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327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328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329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330
-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331

기상청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230
-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231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133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134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135
-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136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2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4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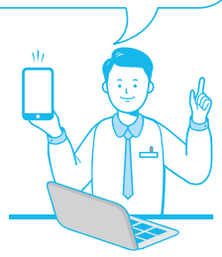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7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11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2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13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기획재정부) 14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15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6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17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18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19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2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21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 22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23
-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4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25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26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기획재정부) 27
-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28
-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29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3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31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 32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3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기획재정부) 34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35
-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36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37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국세청) 38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국세청) 39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40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56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61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국방부) 64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국방부) 66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국방부) 67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69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71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병무청) 73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74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병무청) 75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76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무청) 77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병무청) 79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외교부) 94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97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법무부) 101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법무부) 102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행정안전부) 106
- 청년마을 조성 확대 (행정안전부) 107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110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113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120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인사혁신처) 122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인사혁신처) 123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인사혁신처) 124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경찰청) 127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128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소방청) 131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134
-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136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38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139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156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157
-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64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65
-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67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68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0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1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2
-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3
-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74
-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176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78
-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 179
-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180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해양수산부) 183
-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184
-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188
-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 189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해양수산부) 190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해양수산부) 191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193
-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94
-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해양수산부) 196
-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해양수산부) 197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해양수산부) 198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199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218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환경부) 222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223
-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226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부) 228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환경부) 229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9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43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74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75
-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 277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보건복지부) 284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288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290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292
-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보건복지부) 294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295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296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298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301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02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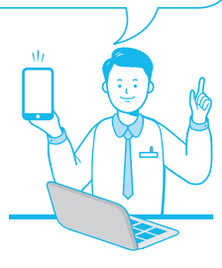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303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30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306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307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308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09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310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고용노동부) 312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314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국토교통부) 315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국세청) 324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질병관리청) 325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질병관리청) 327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질병관리청) 330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335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337

2월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41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국방부) 62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병무청) 78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80
-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방위사업청) 81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108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8
-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9
-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121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186
-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95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203
-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상청) 231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49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313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338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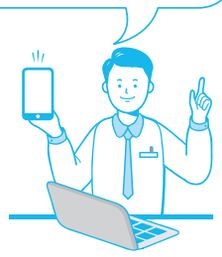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3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42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44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52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국방부) 68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조달청) 126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58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66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177
-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해양수산부) 187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해양수산부) 192
- "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농촌진흥청) 209

4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방위사업청) 82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외교부) 93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통일부) 95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109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경찰청) 130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환경부) 214
- 상수도 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 224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환경부) 227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41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42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244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245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250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251
-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252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특허청) 253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특허청) 254
-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특허청) 257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304

5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경찰청) 129
-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133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문화재청) 143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200
-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248

6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9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방부) 63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 100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안전부) 115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소방청) 132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해양수산부) 181
-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185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339

기 타 : 2020년 기 시행되었거나 2021년 시행 예정(날짜 미정)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교육부) 49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51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건복지부) 53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54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보건복지부) 55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국방부) 65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국가보훈처) 70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 72
-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통일부) 96
- 국가송무체계 개선 (법무부) 99
-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법무부) 103
-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법무부) 104
-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법무부) 105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행정안전부) 111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행정안전부) 11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114
- 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청사" 조성 (행정안전부) 116
-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행정안전부) 117
-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법제처) 125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135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재청) 140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문화재청) 141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142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55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59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60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61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62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63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69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75
-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182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201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해양수산부) 202
-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해양수산부) 204
- 해양환경교육 확대 (해양수산부) 205
- 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해양수산부) 206
-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 207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해양수산부) 208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환경부) 215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216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환경부) 217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환경부) 219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부) 220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부) 221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환경부) 225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상청) 230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7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8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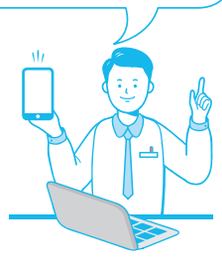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46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247
-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255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특허청) 256
-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 258
-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특허청) 259
-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특허청) 260
-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특허청) 261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73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276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보건복지부) 278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보건복지부) 279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280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281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282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 283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285
-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286
-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287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보건복지부) 289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91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293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297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299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30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311
-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316
-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318
-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320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321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322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323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질병관리청) 326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질병관리청) 328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질병관리청) 329
-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질병관리청) 331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336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국방·병무
04 행정·안전·질서
05 문화·체육·관광
06 농림·수산·식품
07 환경·기상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9 보건·복지·고용
10 국토·교통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5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종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
대상 자산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 열거(positive방식)
공제율	제도별 상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After

종류	현행 제도 통합 · 재설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대상 자산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negative방식, 토지 · 건물 · 차량 일부 제외)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신설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1 · 3 · 10% 신성장 · 원천기술투자는 3 · 5 · 12% (추가공제 : 증가분 투자액) 3%

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현재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 일반 : 0.5~2,7%
- 3주택 이상 + 조정2주택 : 0.6~3.2%

세부담상한
- 조정 2주택 : 200%

After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1년부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 일반 : 0.6~3.0%
- 3주택 이상 + 조정2주택 : 1.2~6.0%
- 법인 : 3.0%, 6.0%

세부담상한
- 조정 2주택 : 300%
- 법인 : 폐지

3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9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Before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20%p

After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30%p

4 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p.37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로 결정하여 예정 고지

5 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p.38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각 주무관청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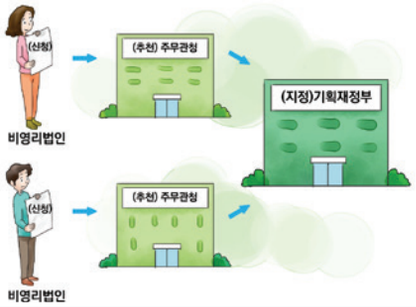

After

'21년 1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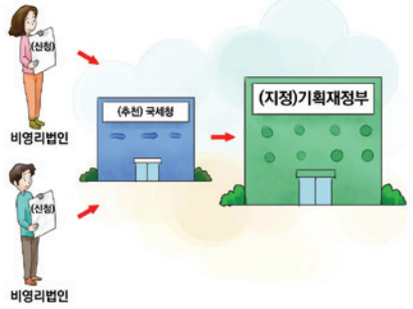

6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행일 : 2021년 3월 25일

Before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왔습니다.

After

'21년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 습니다.

현 행		개 정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기본공제율 :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추가공제율 : 모든기업 3%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공제율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단, '20 ·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 7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 ·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20.7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현행 :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 개정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법인) 3.0%, 6.0%
  - 세부담 상한 인상
    - 현행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개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현행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 90%)
    - 개정 : (법인)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 현행 :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
    - 개정 :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20.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②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①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②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7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추진배경**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 부과

▣ 또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 ·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 (예) 주류 제조 · 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추진배경 :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 • 주요내용 : 주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였습니다.

▣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가 허용됩니다.

* 「주세법」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추진배경 주류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추진배경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 - 기존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개정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 · 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현행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확대대상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 ·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 보험가입 간주 :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의무 신설	
• 추진배경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행 의무발급 대상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추진배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업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주요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조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 (현행)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소득세 과세

- 단,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

▣ (개정)

유 형	납세의무자	대상 신탁	과세방식
수익자 과세	수익자	원칙(일반적인 경우)	소득원천별 과세
위탁자 과세	위탁자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 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소득원천별 과세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1단계: 신탁재산 2단계: 수익자	수익증권발행신탁, 목적신탁 등 중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 (위탁자가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2단계 과세 1)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2)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 旣납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추진배경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 주요내용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현행

- 대상자산 : 2018.7.1.~2020.6.30. 취득한 다음의 자산

① 중소 · 중견기업 → 설비투자 자산* 전체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사용되는 경우 한정)

②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19.7.3~'20.6.30. 취득분)

▣ 개정 : 적용기한 한시 적용('21.1.1.~'21.12.31. 취득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 추진배경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주요내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21년 취득분)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적용요건 :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 기업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적용기한 : '21.1.1~'22.12.31.까지 출자 등 취득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 추진배경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
• 주요내용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등 취득분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투자 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재설계

①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65%→70%)

②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 확대(총급여 7,000만원→8,000만원)

③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1년→2년)

▣ 적용기한 연장 : '20.12.31 → '22.12.31.

▣ 적용시기

- (기업소득 · 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기업소득 비중 조정, 임금증가 대상 및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손금 손금불산입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 추진배경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 주요내용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하였습니다.

* 법인의 자금부담 분산 및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 추진배경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법인세 중간예산의무 면제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243)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산출세액이 없거나, 국외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성이 축소될 우려를 해소

▣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 추진배경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 주요내용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가능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구분	현행	'21 ~ '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7월)

증권거래세율 인하

- **추진배경**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추진배경**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금액 1억 원, 14% 세율 분리과세
  - (적용기한) '22.12.31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주요내용**
  -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금액 2억 원, 9% 세율 분리과세
  - (적용기한) '22.12.31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 원 ×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추진배경**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 **주요내용**
  -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 (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 소명절차 등 권리보호절차를 명확화하였습니다.

▣ 현행 관세법상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 개선하였습니다.

▣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구제 절차 신설	• 추진배경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 주요내용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세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명확히 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 현재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 한정되어,

▣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 →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추가

▣ 동 개정으로,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 시 구매자가 제공하는(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특정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수출기업 등 지원으로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감면 허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044-215-4433)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제도는 유효기간(3년) 경과시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 추진배경 유효기간 경과건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예 :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저세율→고세율)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만 가중될 가능성 • 주요내용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3년 ⇒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044-215-4433)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대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저율관세(3%)를 부과합니다.

▣ 유량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주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입니다.

▣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1년부터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3%)를 부과하도록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 추진배경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가 작동방식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 •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유량조절기 : 관세 3% • 전기식의 유량조절기 : 관세 8% • 주요내용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3%)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044-203-3214)

2021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됩니다.

▣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공제대상 : 신문구독료(신문법 제2조제1호 종이신문 대상)
- 공 제 율 : 30%
-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추가공제)

참고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 추가

- **추진배경**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
  - 공 제 율 : 30%
  -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2)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9년 12월 30일)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 **추진배경**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19.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20.2.11. 개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국세청 법인세과 (☎ 044-204-3327)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

▣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됩니다.

▣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법인 신고 안내〉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 추진배경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종전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주무관청 → (지정) 기획재정부 - 개정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국 세 청 → (지정) 기획재정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044-204-3422)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분양권 주택수 계산에 포함	
• 추진배경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044-204-3422)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 **추진배경**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 **주요내용**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 044-204-3452)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

* 상속세 신고인원 : ('15)5,452명 ('16)6,217명 ('17)6,970명 ('18)8,449명 ('19)9,555명

▣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 **추진배경**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 **시행일** 2021년 2월 예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02-2100-2642)

全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이 '21.3.25일 시행됩니다.

▣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6大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 강한 제재 부과

-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50% 이내) 부과근거 신설
- 개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확대·신설

- (피해방지) 청약철회권[1], 위법계약해지권[2], 판매제한명령권[3] 등

* 1)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2)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 관련 계약 해지 요구 가능
3)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우려 시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 (사후구제)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전환(소비자 → 금융회사)하고,
- 소송중지제도[1], 조정이탈금지제도[2] 등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시도 예방 제도를 신설

* 1)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 시 해당 소송 중지 가능
2) 일반소비자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제 도		제정 전	제정 후
사전 규제	6大 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령상 규율 없음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사후 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신설된 권리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투자자문업, 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없음	
사후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가능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판매제한명령권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발동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 규정 없음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5.28.)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추진배경**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 **주요내용**
  - 개별업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통합 규율(기능별 규율체계 마련)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00-17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P2P금융업자)도 포함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 개정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는 2021년 3월 25일부터, P2P금융업자에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상자산 관련 개정 보도자료('20.3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이행 / P2P 금융업을 규율하는 법령 시행
	• 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외에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 시행일 2021년 3월 25일(가상자산사업자), 2021년 5월 1일(P2P금융업자)

02

교육·보육·가족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49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21년 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일관된 정책과제로 인재 육성을 지속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 신설
AI 인재양성 지표개발	• 정부와 각종 교육 · 훈련기관대상 AI, 프로그램 등 비교 · 분석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신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사회적 의사 결정기구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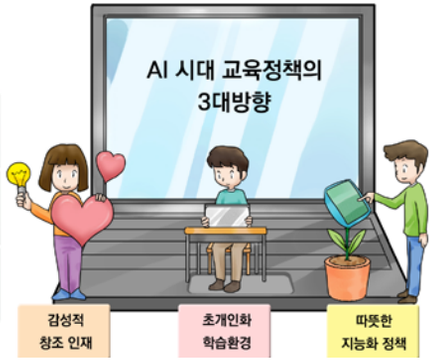

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5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시행일 : 2021년

Before

'20년 고 2 ·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After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3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52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시행일 : 2021년 3월

Before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를 지원하고있습니다.

After

'21년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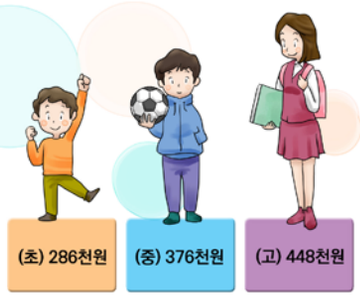

4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53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시행일 : 2021년

Before

After

'21년부터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5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5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Before

그동안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정부지원시간 : 720시간
- 정부지원비율 : 최대 85%

After

'21년 1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정부지원시간 : 840시간
- 정부지원비율 : 최대 90%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044-203-6342)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첫째,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 둘째,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 셋째,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과제 발굴을 지속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 〉

AI의 영향과 시사점	정책방향 도출
(인재상) 인간-AI 협업시대, 인간 창의성, 감성에 집중→ 인간중심 사고에 기반하여 새 구조를 만드는 창의력 요구	감성적 창조 인재
(학습환경) AI는 학습자에 최적화된 학습방법과 자료 제공→ 학습자의 특성/수준/상황 맞춤형 개별화 교육 기대	초개인화* 학습환경
(정책과정) AI, 빅데이터 등 기반 행정혁신 시대→ 빅데이터 관리체계 필요 및 데이터 활용 포용정책 기대	따뜻한 지능화 정책

*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고도화되는 개인 맞춤형 방식

AI 교육을 학교에 도입합니다.

▣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합니다.

▣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히 고교에는 2021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됩니다.

AI 인재양성 지표를 개발합니다.

▣ 정부와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함께 발간합니다.

▣ 지표는 범정부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책제안을 위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교육빅데이터위원회」가 출범합니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여, 교육 데이터의 축적·관리·활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중요한 정책결정에 활용합니다.

* (구성) 교육부장관(위원장), 교육기관협의회장 등(당연직), 교육데이터 소유자, 생성자, 활용자, 빅데이터전문가 등(이상 위촉직)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20.11.20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 **추진배경** 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일관된 정책과제 발굴 유도
- **주요내용**
  - 3대 방향 : ①감성적 창조 인재, ②초개인화 학습환경, ③따뜻한 지능화 정책
  - 유초중고 AI 교육 도입 : 관련 콘텐츠 개발, 과목신설 등('21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25년)
  - 범정부 AI 인재양성 정책 비교·분석 등을 위한 지표개발('21년)
  -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신설('21년)
-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1)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개요

-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 **시행일** 2021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946)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원, 중학생은 376천원, 고등학생은 448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 중위소득 50%(예 : '21년 기준, 4인가구 243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1년 교육급여 지원 확대 및 항목 개편 〉

2020			▶	2021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지원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년 대비)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286,000원	38.8%↑
	중	212,000원				중	376,000원	27.5%↑
	고	339,200원				고	448,000원	6.1%↑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고	83,000원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지급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시행일** 2021년 3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2)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 보조교사 2.8만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천명 확대

▣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배치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1년, 1,011천원)와 사용자부담금(30%)을 지원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2021)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추진배경**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 **시행일**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044-202-3361)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1년에는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 **추진배경**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
  - (돌봄인력)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 **시행일** 2021년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 지난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88조

▣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

-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하여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50인 미만 어린이집 의무,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권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 대상 기자재 지원은 2021년부터 가능합니다.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추진배경** 그간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던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확산 예방 도모
-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 예정에 따라 5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보존식 용기) 지원(20인 미만 어린이집 권고)
- **시행일**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가족부 '21년 예산('20.12.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 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 시행일 2021년 1월

03

국방·병무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61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시행일 : 2021년 1월

Before

매년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구분	봉급액
병장	540,900
상병	488,200
일병	441,700
이병	408,100

After

'21년에는 병 봉급을 '20년 대비 12.5%를 인상합니다.

'21년 : '17년 최저임금의 45%

구분	봉급액
병장	608,500
상병	549,200
일병	496,900
이병	459,100

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62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시행일 : 2021년 2월

Before

종전에는 현역병 입영적체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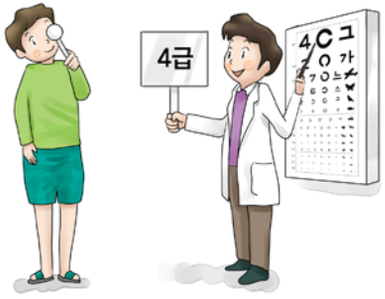

After

'21년부터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문신의 경우 모두 현역으로 판정합니다.

3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63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시행일 : 2021년 6월

Before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에 한정하여 징집이나 소집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After

'21년부터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합니다.

4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7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1월

Before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임무 부여 시 활용 됩니다.

5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72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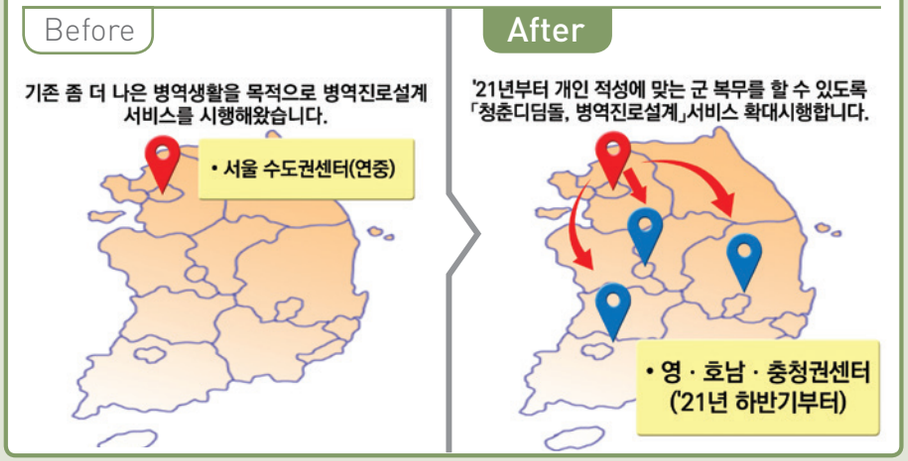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도 국방예산 확정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추진배경**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구분	봉급액
병장	540,900
상병	488,200
일병	441,700
이병	408,100

➡

'21년 : '17년 최저임금의 45%

구분	봉급액
병장	608,500
상병	549,200
일병	496,900
이병	459,100

➡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구분	봉급액
병장	676,100
상병	610,200
일병	552,100
이병	510,100

- **시행일** 2021년 1월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6)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먼저, '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1045.「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 추진배경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 •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 시행일 2021년 2월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방부 인력정책과 (☎ 02-748-5137)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징집) 국가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소집) 국가가 현역 복무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병역법(대안)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추진배경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내용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 (병역법 제60조) • 시행일 2021년 6월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6~7)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피복류 보급 기준을 개선하고,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여름철 체온상승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년부터 숄 장병에게 1벌씩 보급을 시작한 '컴뱃셔츠'*를 '21년에는 세탁과 교대 착용이 가능하도록 1벌을 추가하여 총 2벌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 컴뱃셔츠 : 기능성 소재로 제작되어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

▣ 또한,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 94,440원에서 '21년부터는 138,600원으로 인상하여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장병 위생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군 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 치약·칫솔·샴푸·바디워시·세안제+(추가) 로션·스킨

▣ 이를 통해, 장병들의 피복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피복류 보급 개선

- **추진배경** 병사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컴뱃셔츠) '20년 1벌 보급 → '21년 2벌 보급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20년 연 94,440원 (월 7,870원) →'21년 연 138,600원 (월 11,550원)
- **시행일** 2021년 1월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7486)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를 신규 보급합니다.

▣ 냉장고가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돼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게 되며, 화장용품·한약 등 냉장제품의 보관도 가능해져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방일보 설문조사('19년) 결과, 냉장고는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정

▣ 혹서기 이전인 '21년 전반기 내 전군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 총 보급물량(14,673대)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물량(대)	14,673	11,317	553	959	1,196	648

軍 부대 내 쇼케이스 냉장고 신규보급

- **추진배경** 병사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
- **주요내용**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 14,673대를 보급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 02-748-5758)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휴가를 갈 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그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이하 제주지역 병사)들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등을 갈 때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 '21년부터는 제주지역 병사들이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등을 갈 때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항공료 지원 확대'는 제주지역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지역 근무·거주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제주지역 병사의 정기휴가 외 포상, 청원휴가 시 항공료 부담 해소
- **주요내용**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육군 위주에서 全軍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하여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 '14년 육군을 대상(79명)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해 육군 위주로 확대 운영('20년, 1,769명)해 왔으며, '21년부터는 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全軍으로 확대 시험적용 합니다.

* '14년 최초(79명) → '18년(585명) → '19년(1,023명) → '20년(1,769명) → '21년 全軍 확대 적용(3,011명) – 해·공군·해병대(59명)

▣ 향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조 하, 「예비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 **추진배경**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발휘 보장
- **주요내용**
  - 제도 운영을 육군 위주에서 全軍으로 확대
  - 제도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79	79	169	269	585	1,023	1,769	3,011
육군	79	79	169	269	585	1,023	1,749	2,952
해군	–	–	–	–	–	–	20	20
공군	–	–	–	–	–	–	–	20
해병대	–	–	–	–	–	–	–	19

* '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

- **시행일** 2021년 1월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예비군 훈련 시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훈련장에 신규 설치하고 방역마스크(KF-80 이상) 지급을 확대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합니다.

▣ 열화상카메라는 지역예비군훈련장별 1대·동원훈련장별 2대(총 316대*)를 신규 설치하여 훈련입소 간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 총 316대 : (지역예비군훈련장 186개소×1) + (동원훈련장 65개소×2대씩)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확대 지급(약 371만장)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해 국가 방역 방침에 동참하고, 예비군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비 예비군훈련장 방역대책 강화

-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 고려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의 건강보호 필요
- **주요내용**
  - 열화상카메라 보급 (총 316대)
  - KF-80 이상 방역마스크 지급 (개인당 1매/ 총 약 371.2만장)
    * 육군 341만장, 해군·해병대 5.2만장, 공군 25만장
  -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완비
- **시행일** 2021년 3월 (2021년 예비군훈련 일정 시작 시부터)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02-748-624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을 개선하겠습니다.

▣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합니다.

* 기존 : 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 개선 : 육·해군·해병대 3주

▣ 또한,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1일 표준 교육시간 : 1일 10H(정규 8H, 비정규 2H) / 총 교육시간 : 150H

** 교과중점 : 올바른 기본소양 함양, 군인 기본자세 확립, 기본 전투기술 및 생존능력 습득, 기초 전투체력 배양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기간 조정

- **추진배경** 군별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을 통일하여 입영자원의 형평성 보장
- **주요내용**
  - 상이한 군별 군사훈련 기간(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을 3주로 통일
  - 보충역 임무달성을 위한 군사훈련 교육중점 사항 점검 및 1일 표준 교육 시간표 편성
- **시행일** 2021년 1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044-202-5838)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등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훈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에 보훈심사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도자료〉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전자회의 방식 심사회의 운영근거 마련

- **추진배경**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면회의가 곤란상황에서의 심사지연 문제해소와 보훈심사 기간 단축으로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
-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

▣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됩니다.

참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무단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추진배경**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주요내용**
  -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 **시행일** 2021년 1월(범죄경력 제공은 법 시행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 퀵메뉴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1:1 병역진로상담
    - 군 특기 연계, 적성검사 실시 (직업선호도검사)
    - (병무청) 전문상담관 1:1 상담 → (각 군/고용부 등) 군 생활 및 취업 지원 안내·상담
  - 군 생활 정보제공
    -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지원 등)
    -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계발 정보제공
  - 군 적응 체험·교육
    -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체험관 운영
      * 군 생활용품·사진 전시,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군복·전투식량 시식 체험, 복무 중인 병사 이야기 등
- **시행일** 온라인 서비스(연중), 서울 수도권센터(연중), 영남·호남·충청권 센터 ('21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2021년도부터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 **추진배경** 경제적 취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
- **주요내용**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시행일** 2021년 1월 중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0)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합니다.

▣ '20년에는 공군 기술·전문특기병 11개 직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및 분석,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 시범실시 : 1,641명('20. 7월 ~ 11월)

▣ '21년부터는 공군 전면도입은 물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 추진배경	비대면 사회변화 선제적·능동적 대응,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20년) 공군 일부 직종 시범실시 거쳐 전면 도입 • ('21년)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 시행일	2021년 1월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0)

내년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색각이 있는 사람도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 추진배경	색약이 있어도 조리병 임무수행 가능하여 지원자격 완화 * 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 주요내용	색약자도 조리병에 지원 가능 *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15)

'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19년도 숙박비와 '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21년에는 식비를 인상합니다.

* 병역의무자여비란? 병역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말합니다.

* 교통비(131.82원/km), 식비(7,000원/1식), 숙박비(50,000원/1박)

▣ 개선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부터 적용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7,000원으로 인상	• 추진배경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식비 인상 추진 • 주요내용 • 식비단가 1천원 인상 : '20년 6,000원 → '21년 7,000원 • 여비지급 대상자(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 : 병역판정검사, 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전문산업·공보의 등 입영·소집자, 동원훈련소집자 •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 (1식) 60 초과~300km, (2식) 300 초과~400km, (3식) 400km 초과 및 도서지역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7)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합니다.

▣ '21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고, 복무기관은 우수인력 투입으로 성과 창출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국민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됩니다.

▣ 그동안 각 軍별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상이(육군 4주, 해군 3주)하였으나,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3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세분화하여 관련 복무기관 우선 배치 - (현행) 복지, 교육 전공 → (개선) 현행+보건, 의료, 문화, 환경, 안전 전공 • 군사교육소집 기간 4주에서 3주로 단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6)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 개선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합니다.

▣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티셔츠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색상은 진자주색에서 군청색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무늬는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셔츠에 태극기를 부착하여 자긍심 고취와 공적 임무수행자로서의 신뢰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복 회색, 추동복 먹회색)하며, 단추를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선된 제복은 '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 추진배경	복무 현장에 적합한 제복으로의 개선 추진, 공적임무수행자로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강화
• 주요내용	• 근무복 상의 구성품 변경 : 셔츠 2장 →셔츠 1장+티셔츠 1~2장 • 근무복 색상 변경 : (상의) 군청색, (하의) 하복 회색, 추동복 먹회색
• 시행일	2021년 2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 추진배경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마련으로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복무기관 재지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사회복무포털, 우편송부, 팩스전송, 지방병무(지)청 방문 • 접 수 처 : 지방병무(지)청 • 제출서류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행일	2021년 1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변경	
• 추진배경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학력 차별 논란 해소 등
•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 (종전)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 (변경)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 시행일	2021년 2월중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5)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개편합니다.

▣ 기존 핵심부품국산화사업을 부품국산화사업으로 변경,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지원대상·기준·규모·기간을 다양화합니다.

*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부품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

▣ 수출연계부품개발형 과제는 수출 중(예정)인 무기체계의 수출 제한(E/L)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국산화를 지원하고,

▣ 일반부품개발형 과제는 업체 자유공모로 추진하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서 시험평가비를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 추진배경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로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사업 개편
• 주요내용	•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 다양화 - 현행 : 핵심부품개발형 - 개정 :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부품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 • 다만, 일반부품개발형은 시험평가비 일부만 지원
• 시행일	2021년 2월 5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 02-2079-6389)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국방 R&D 분야에 협약 방식 및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민간 참여를 유인하였습니다.

*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성실한 실패에 대해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 또한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홍보자료〉카드뉴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20.4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 추진배경 국방 R&D 역량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 주요내용 • 정부·연구개발기관간 계약 외에 협약 체결방식 도입 •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現)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사업 → (後) 협약 체결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 • 국가와 연구개발기관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 (現) 국가·개발기관(영리법인 제외) → (後) 국가·개발기관 전체 (영리법인 포함) •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도입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행정·안전·질서

1 통일부

자세한 내용은 p.95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시행일 : 2021년 4월

'21년 4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① 기간 : 2021.4월~8월
② 조사대상 : 국내 이산가족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
③ 방법 : 온라인 · 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 · 방문 조사

2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97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Before

매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After

'21년부터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 범죄현장 대응 규정 강화
- ✓ 임시조치 실효성 제고

3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99

국가송무체계 개선

시행일 : 2020년 12월 28일

Before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행정청에 대한 소송 지휘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

After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 이관

4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00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1년 6월

'21년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

5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01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21년부터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 민원인 범칙금 납부 편의 제고 및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하여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방지

6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06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시행일 : 2021년 1월

Before

'19년부터 환경과 편의를 고려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부터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종이서류 감축을 추진합니다.

7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07

청년마을 조성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종전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키는 '청년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적극 확대합니다.

8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08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시행일 : 2021년 2월

Before

정책자금신청 등 기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였습니다.

After

정부24 앱이나 서비스 신청기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흩어진 자기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

9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09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행일 : 2021년 4월 28일

Before

지금까지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After

'21년부터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10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매년 풍수해 ·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1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8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2월 12일

Before

기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After

'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20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시행일 : 2021년 1월

Before

지금까지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fter

'21년 1월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13 인사혁신처

자세한 내용은 p.122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을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실시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합니다.

14 인사혁신처

자세한 내용은 p.123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국가 ·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에
수험생 부담이 컸습니다.

After

'21년부터 국가 ·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합니다.

15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127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와 영장 청구 및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전부 검찰에 송치하여 왔습니다.

- 검사의 수사지휘권 존재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전부 검찰에 송치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 수단 없음

After

'21년 1월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됩니다.

-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경 · 검 협력조항 신설)
- 경찰을 1차적 · 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 송치)
-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마련

16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128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종전에는 경찰사무가 별도 구분없이 운영되었습니다.

After

'21년부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 관할지역 내의 생활안전 · 여성청소년 · 교통 사무 등 담당

http://whatsnew.moef.go.kr

17 소방청

자세한 내용은 p.13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은 집합교육 등으로 시행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합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02-2100-7673)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령, 법무부령, 외교부예규 등 여러 규정에 나누어 규율하여 왔습니다.

▣ 또한, 발급대상 문서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문서가 아닐 경우 사전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습니다.

▣ 이에 상기 규정들을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령의 접근성 증진 및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 추진배경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및 확인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법령 및 규정에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대다수 문서(사문서)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의 사전절차로서 국내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비용 소모의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 통합 •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 확대
	• 시행일	2021년 4월 28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조력제도팀 (☎ 02-2100-6919)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 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영사조력법 보도자료
외교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국민토론회 보도자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추진배경**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해외 체류 우리 국민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 제공 영사조력의 내용 규정
  -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여행경보 발령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1644-2381)
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 4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체 이산가족이 실태조사 대상이며 현재까지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형제 등)이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또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도 신청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 아울러 최초 신청 당시 이후 연락처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동 기간 중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 : reunion.unikorea.go.kr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 **관련근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요내용**
  ① 기간 : 2021.4월~8월
  ② 조사대상 : 국내 이산가족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
  ③ 방법 : 온라인·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방문 조사
  ④ 안내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1644-2381)
  대한적십자사 (☎ 02-3705-3652)
- **시행일** 2021년 4월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02-730-6658)

국민의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와 이용편의를 위하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이용시 제출하던 서류를 간소화하고 북한자료센터 분소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북한 특수자료 대출·복사시 이용자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공문·기관장추천서'를 폐지하여 소속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제출하던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료이용신청서 등 3건의 서류를 자료이용신청서 하나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료 대출기간을 1주간에서 2주간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직원에 대한 대출 우선순위 부여조항도 폐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북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거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일부 소속기관 자료실에 대한 '북한자료센터 분소' 지정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북한자료센터 자료이용 변경 안내

북한 특수자료 관련규정 개정	
• 추진배경	특수자료 이용절차 간소화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
• 주요내용	• 특수자료 대출·복사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일부 폐지, 제출서류 양식 일원화 • 북한자료센터 분소 지정 근거조항 마련
• 시행일	2020년 7월 20일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695)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하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20.10월)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추진배경** 가정폭력범죄 심각성 증가
- **주요내용**
  -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 현행 : 가정폭력행위자 ·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개정 : 가정폭력행위자 · 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현장출동 경찰관의 안내 의무 강화
    - 현행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개정 : 기존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 현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 확대
    - 현행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개정 :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
    - 현행 :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시 종전의 처분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 개정 :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 확대
  -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추가(신설)
  -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시 형사처벌(신설)
-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국가송무체계 개선

법무부 국가소송과 (☎ 02-2110-3202)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분산·위임되었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송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함과 동시에 점진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충분한 관련 법령 검토 및 조직 정비 기간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국가송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 국가송무체계 1단계 개선 방안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20. 8.)

국가송무체계 개선

- **추진배경**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성·통일성을 갖춘 국가송무체계 구축
- **주요내용**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권한을 법무부로 우선 이관(1단계)하고, 이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이관(2단계)
  ※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 방지 등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 중
-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02-2110-4073)

2021년 6월경부터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됩니다.

▣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 **추진배경**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상 :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
  - 신청방법 : ETA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수수료 : 1만원
  - 유효기간 : 2년
- **시행일** 2021년 6월중 시행 예정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2110-4079)

2021년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 일시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20. 11.)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 **추진배경** 민원인 범칙금 납부 편의 제고 및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하여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방지
-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당장 현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신용카드 납부 시 사실상 분납 효과 기대)
-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2110-4079)

2021년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 대상자가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는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20. 11.)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항공기 운항을 축소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자국 송환이 지연됨에 따라 초래된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 외국인 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고 자진 출국시키는 제도인 출국명령을 활성화하되, 도주 가능성 차단을 위한 보증금 예치 등 도주 방지 수단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출국명령 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부과, 출국 시 반환
-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법무부 법조인력과 (☎ 02-2110-3820)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험의 실질적 공정성 확립과 응시자 편의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시험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시자 편의를 개선합니다.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합니다.(현행 9개 시험장)

▣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을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순한글 법전으로 제작해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합니다.

▣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기존에는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서만 허용)합니다.

* 시험 시작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 허용

▣ 관련내용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변호사시험장 확대 보도자료('20.10월)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변호사시험 편의지원 확대 보도자료('20.4월)

변호사시험 시험장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 **추진배경**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 및 응시자 편의 증진
- **주요내용**
  -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 (현행) 9개 시험장 → (개선) 전국 25개 시험장
  -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자 편의 개선
    -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 → (개선) 순한글 법전
    - (현행) 일부 과목만 화장실 사용 허용 → (개선) 전 과목 화장실 사용 허용
- **시행일**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 (☎ 02-2110-3388)

Post 코로나 대비 원격의료시스템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구축합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에 직면하여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 할 수 있는 의료체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인력의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자,

〈 최근 교정기관 원격의료 실적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2,492건	14,377건	16,799건	22,554건

▣ 2021년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전국 교정시설에(53개)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한 교정시설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의료)를 통해 수용자 의료처우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법무부 직업훈련과 (☎ 02-2110-3410)

출소자의 직업능력 및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 여주교도소에 이어 강원북부교도소에 추가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을 신설하여 중장비 교육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 민간 중장비 학원과 협력하여 외부출장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장비 훈련 직종을 다양화하였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출소 전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취득 후 추가 직종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출소 후 국비로 실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유사 직종 자격취득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 **추진배경** 외부기관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노동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비 관련 직종으로 직업훈련을 다변화함으로써 출소자 직업능력 및 고용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 (지게차 과정 신설) 강원북부교도소 지게차 운전기능사 과정 추가 신설
  - (외부출장 직업훈련) 민간 중장비 학원과 연계하여 굴삭기, 로더 등 중장비 훈련직종 확대
  - (공공기관 협업 중장비 직업훈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출소 전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취득 후 추가 중장비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출소 후 국비 실기교육을 지원하여 유사직종 자격취득 기간 단축
- **시행일** (지게차운전 훈련) 강원북부(교) 2021년 상반기 시행
  (외부출장 직업훈련) 2020. 10. 19. 시행
  (공공기관 협업 중장비 직업훈련) 2021년 상반기 시행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5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2021년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증명서 검색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추진계획

- **추진배경**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종이서류 감축 추진
- **주요내용**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운영
  - 1단계 : ('19) 종이증명서 발급 양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
  - 2단계 : ('20)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확대(누적 100종)
  - 3단계 : ('2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상 단계적 확대
- **시행일** 2021년 1월(전자증명서 100종으로 서비스 확대)

청년마을 조성 확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 044-205-3451)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합니다.

* 청년마을 조성사례: 전남 목포('18년), 충남 서천('19년), 경북 문경('20년)

▣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합니다.

▣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하여 이주청년의 정착지원을 강화합니다.

▣ 청년마을 확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됩니다.

* 지방소멸 위험지역(2020 한국고용정보원): ('13년) 75개 → ('20년) 105개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청년마을 보도자료

청년마을 조성 확대

- **추진배경**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청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청년마을의 전국 확산(12곳) 필요
- **주요내용**
  -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 거주·창업·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역정착에 필요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교류 활성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 044-205-2472)

디지털 시대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2~3일 소요되었으나,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즉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 '21년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공공 개인정보 활성화로 디지털정부 선도국 위상 강화('20.10.26.)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추진배경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직접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편익 증진 • 주요내용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필수정보만 한곳에 모아 관리 및 활용하는 서비스 • 시행일 2021년 2월 이후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 044-205-6463)

국민이 정부24 한 개의 웹사이트만 접속해서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중앙부처 수혜서비스를 '21년 2월에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4월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20. 5. 27.)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개인(만 14세 미만 자녀 포함)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이용권 등 수혜서비스를 쉽게 확인 가능 • 시행일 2021년 4월 28일(잠정)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54)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였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 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예정지구 포함, 피해영향범위 포함)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주택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 **추진배경**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 **주요내용**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율 상향

현 행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온실	52.5%(최대92%)	47.5%
소상공인	59%(최대92%)	41%
취약지역	52.5%(최대92%)	47.5%

개 선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온실	70%(최대92%)	30%
소상공인	70%(최대92%)	30%
취약지역	87%(최대92%)	13%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5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민박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 가입대상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m2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

▣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 보험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2021년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2021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추가

- **추진배경** 숙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나,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사고 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
- **주요내용**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가입 특례기간 : ~2021년 6월 9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60)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2020년 10월 12일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출신 지역이 노출되거나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 방지

▣ 주민등록 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등 보도자료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최초 구축('98년)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사회·기술·행정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
  -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적시적 처리를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개선
- **시행일** 2020년 10월 12일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 044-205-2748)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종전의 공인인증서(NPKI) 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 향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12월 10일,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2020년 12월 10일)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추진배경**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 개선
- **주요내용**
  -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어 공인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됨
    ※ 전자서명법 개정(2020년 6월 9일) 및 시행(2020년 12월 10일)
  - 공공웹사이트에서 여러 민간전자서명으로 편리하게 본인 인증
- **시행일** 2021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044-205-226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운영 됩니다.

▣ 공공기관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를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

▣ 내부검토 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시 진행단계 등을 안내하고,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시 생년월일을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을 추가* 하고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를 통해 이의신청 등 정보공개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 현재: 행정기관(305개), 공기업(35개) → 확대: 준정부기관(89개), 지방공사·공단(136개)

** 일반적인 공공기관(1/2→2/3),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 기관 현행 유지(1/3이상)

▣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조사·개선권고 등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폭넓은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소통하는 혁신정부 구현
  *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 재구축)
- **주요내용**
  - 공공기관별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무 부여
  - 내부검토 등으로 비공개시 진행단계 알림 및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 강화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대상기관 확대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및 조사 및 개선권고 등 기능 강화
- **시행일** 2021년 12월 22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44-205-3541)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의 결함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0일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옥외광고물법 개정 보도자료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추진배경** 옥외광고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과 그로 인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 최소화
- **주요내용**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 책임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하도록 규정
-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청사" 조성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044-200-1152)
관리총괄과(☎ 044-200-1135)

정부청사는 '25년까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저감형·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합니다.

▣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를 대상으로 단열 보강 및 고효율 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4등급→1등급)하고,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에너지 저장장치, LED 조명) 도입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부청사 주변 풍부한 수목 식재(울타리·실내 공기정화 숲 조성 및 옥상정원 등)를 통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열린 청사를 구현합니다.

정부청사의 저탄소·고효율 및 친환경 사업 추진을 통해 그린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 정부청사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도적이고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청사의 그린 뉴딜 사업

- **주요내용**
  ① 노후 정부청사 그린 리모델링
  ② 에너지관리 효율화시설(기자재) 구축
  ③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④ 공조시스템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구축
  ⑤ 정부청사 주변 울타리 숲 조성
  ⑥ 정부청사(2단계) 옥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⑦ 다중이용공간 자연친화적 공기정화 식물 조성
- **시행일**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45)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하였습니다.

▣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 필수 5종)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 (개선 : 필수 7종) 필수 5종 + 화면확대기능, 휠체어사용자조작기능(1,220mm이하)

▣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습니다.

▣ 신제품 개발, 성능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무인민원발급기 검색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 **추진배경**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 필수규격 5종 → 7종 확대
  - 결제수단 다양화 : 현금 외에 신용·체크카드(필수), 모바일 간편결제(선택)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72)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추진배경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
	•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77)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 추진배경 동물등록제 활성화
	• 주요내용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하여야 함 * 2개월령 이상인 개
	•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5)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20.9.24.)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추진배경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 구체화 ・성폭력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 강화 • 시행일 2021년 1월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8)

코로나 치료제,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특별보안검색 제도가 간소화됩니다.

▣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특별보안검색*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청·승인(3일소요)이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처리절차가 면제됩니다.

*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적정온도 상시유지 및 형질변경 요인이 될 수 있는 X-ray검색 제외(☞ 폭발물흔적탐지장비로 대체 보안검색 실시)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예정)부터 적용됩니다.

* (진행상황) 입법예고('20.11.19~12.28) → 규제심사(7일) → 법제처심사(2주)

참고 국토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간소화('21.2월)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간소화	• 추진배경 국내 제약업계의 바이오시장 확대에 대비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규제완화) 등 선제적 지원조치 필요 • 주요내용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 *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등 행정처리절차(3일 소요) 불필요 • 시행일 2021년 2월 중(예정)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04)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 도입됩니다.

*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

▣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됩니다.

▣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뀝니다.

▣ 또한,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됩니다.

〈 '21년 7급 공채 시험과목 (예시 : 일반행정 직류) 〉

	1차(공통과목)					2차(전문과목)*			
현행	국어 (20문)			영어	한국사 (20문)	헌법 (20문)	행정법 (20문)	행정학 (20문)	경제학 (20문)
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 시험	검정 시험	헌법 (25문)	행정법 (25문)	행정학 (25문)	경제학 (25문)
	언어논리 (25문)	자료해석 (25문)	상황판단 (25문)						
				(기존 대체)	(2021년 대체)	* 과목은 현행과 동일			

▣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7급 공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20.6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문제/정답안내〉7급 PSAT 모의평가('20.11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공직적격성평가 (PSAT) 도입

- **추진배경** 공무원 채용시험의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민간 호환성 제고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종전) 2단계(필기+면접) → (개선) 3단계(1차 PSAT + 2차 전문과목 + 3차 면접)
  -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04)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납니다.

* 2021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20.10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시험공고/공지사항〉인정기간 연장 관련 안내('20.10월)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 **추진배경** 공무원 채용시험의 수험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
- **주요내용**
  -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종전) 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 → (개선) 5년으로 연장
    - 대상시험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방공무원 7급 공채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행정안정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디지털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되게 됩니다.

▣ 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 청사출입 및 공직자통합메일 로그인 등 다방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 디지털 전환 빨라진다('20.10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20.11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 추진배경 디지털 뉴딜계획의 일환 • 주요내용 • (발급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 ※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 • (활용)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공직자통합메일 로그인 등 • 시행일 2021년 1월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044-200-6783)

법령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12.10.)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던 공공기관 규정 등도 법령정보에 포함되어 이용 가능한 법령정보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정보: (종전) 약 410만건 → 향후 약 600만건

▣ 정부기관 외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 425개 기관의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서비스합니다.

▣ 또한,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서만 보유하던 법령 관련 자료를 개방하고, 공공 빅데이터인 법령정보를 민간이 사업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정 법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기업 법령정보 활용 더 쉽고 편해진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 추진배경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 법제처장의 법령정보* 수집 의무, 법령정보시스템 등재 의무 *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헌법기관 규칙, 법령위임에 따른 공공기관 규정, 헌재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규제영향분석서, 자치법규 의견 제시례 등 • 공공데이터로서 법령정보 개방·가공 및 민간의 활용 지원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302)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됩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입찰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 **추진배경** 조달우대 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공공판로 지원 및 포용성장 뒷받침
-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조달청 입찰 가점(2점) 적용 범위
  - (종전) 2억원이상 물품 입찰 → (개선)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
- **시행일** 2021년 3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 02-3150-1646)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써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 협력조항을 신설하여, 양 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하여,

- 검사는 6대 범죄 등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또한 제정되어 함께 시행됩니다.('21.1.1.)

※ 다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2.1.1.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 **추진배경**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 **주요내용**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
  -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 설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
  -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마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 02-3150-0666)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 이번 도입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어, 자치경찰이 ▲ 학교폭력 ▲ 아동·여성 관련 범죄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체계입니다.

* 위원회는 총 7명으로, ▲ 국가경찰위원회 ▲ 시·도교육감 ▲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

▣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둔 후 전국으로 확대('21.7.1.)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 **주요내용**
  -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사무) 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일부)
  - (시도자치경찰위)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및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경찰청 교통안전계 (☎ 02-3150-063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추진배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 **주요내용**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행	개정(안)
범칙금·과태료 (승용차기준)	4만원	8만원	12만원

- **시행일** 2021년 5월 11일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2753)

'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됩니다.

▣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됩니다.

* 전국 13개 도시 시행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정책

※ 단,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운영 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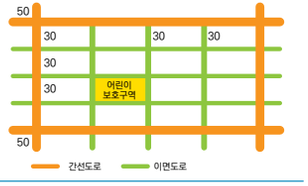

▣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안전속도5030 전국 시행

- **추진배경** 보행사고 92%가 발생하는 도시부 지역 내 교통안전 향상
- **주요내용** 도시부* 내 일반도로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은 60km/h 이내로 관리

  *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시행일** 2021년 4월 17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중단 후('20.2.24), 교육재개('20.7.1)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개발*하였습니다.

*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등 5개과정 15개유형 콘텐츠

▣ '20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하였으며, '21년부터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이에 따라 '20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소방관서 행정조치를 '21년 3월까지 유예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변경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실무교육 개선 전후 비교

- **주요내용**

구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인원	50명 이내(거리두기 1m 준수)	-
교육시간	집합교육 4H+사이버교육 4H	사이버교육 8H(의무6H, 자율2H)
실습·평가	교육기자재	실습 동영상 및 평가문제 활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044-205-7482)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관련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 '17.11.2. 창원터널 사고(사망 3, 부상 7), '15.10.26. 상주터널 사고(부상 20)

▣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 규정과 무자격자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 수료(벌칙) 1000만원이하 벌금 부과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 규정 정비

- **추진배경**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위험물 도로수송의 안전 강화
- **주요내용**
  -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는 법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자격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044-200-4122)
디지털조사분석과 (☎ 044-200-4685) / 경쟁정책과 (☎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적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였습니다.

▣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절차 전반에 있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 방어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5.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 **주요내용**

구분	개정 내용
신고·조사	•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 조사 시간 및 조사 기간 관련 규정 도입 •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 신설 •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 · 진술권 명문화 •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 · 복사 요구권 명문화
심의·처분	• 조사 결과 통지 의무 명확화 •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 제한 • 심의 절차 개시 후 증거조사 규정 신설 •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 **시행일** 2021년 5월 20일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934)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창업단계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사전(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하여야 함

▣ 앞으로 가맹본부는 자신의 정보공개서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들의 평균영업기간, 경영상 지원제도 운영 시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게시일 '20.4.2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추진배경** 가맹점 경영 여건 개선 목적
- **주요내용** ① 창업 정보 제공 강화(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② 즉시 해지 사유 정비,
  ③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④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 완화
- **시행일** 2020년 4월 28일 시행
  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관련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44-200-4409)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인증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준과 배점을 조정하고, 소비자 체감 항목 평가를 강화, 소비자 관점의 공익** 실현 확산 등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인력·체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심사지표 조정

**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등

▣ 소비자 관련법 위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등에 대한 재량적 취소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여부, 소비자 피해 규모 및 확산 가능성, 피해 구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조치와 노력 등

▣ 개정내용은 시행 이후(2020년 12월 예정) 즉시 적용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여부 확인 가능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제도 관련 규정 정비

- **추진배경** CCM 인증 심사기준 및 재량적 취소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심사기준에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의 공익 실현을 유도하는 등 심사지표를 정비
  - 인증 취소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도입하고, 주체별 구체적 취소 절차를 마련
- **시행일** 2020년 12월(예정)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044-200-4466)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를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토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정비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시 상품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까지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통신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온라인 등록된 상품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추가배송비 관련 정보 기재 필요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게시일 '20.9.22)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 추진배경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결
• 주요내용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 정보 일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정확히 표시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05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9)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인원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1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년) 1인당 연 9만원, 171만 명 → ('21년) 1인당 연 10만원, 177만 명

▣ 또한, 2021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2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및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지원금 상향 및 인원 확대 ('20년) 연 9만 원, 171만 명 → ('21년) 연 10만 원, 177만 명 •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20년도 발급자가 '21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을 보유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에 재충전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044-203-2437)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정도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불필요한 부가 정보 표시항목*을 삭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비디오물제작업자 등 신고번호, 제작연월일

▣ 내용정보 표시 그림문자를 개선하여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였으며,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내용정보 표시 그림문자 개선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042-481-486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과 비축에 관한 사항,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추진배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6.9.공포)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문화재청에 설치하여 중요한 문화재수리정책을 심의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등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방법과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과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042-481-4968)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교육사'로 명칭이 바뀌고,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교육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맞게 '전승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전수교육 권한이 부여된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21년도부터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전수교육은 전승주체(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의무사항임.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모든 전승교육사에게 적용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무형문화재법령 개정 보도자료

전수교육권한을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 **추진배경** '전수교육조교'가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유자 없는 종목 등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하고 역할에 맞게 명칭 개정
- **주요내용**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
  -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단, 개인종목에 한함)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042-481-4685)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하는 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수증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함으로써,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근거 마련

- **추진배경**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며, 문화재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 있음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02-6450-3849)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능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및 변경허가는 신설되는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에서 처리하여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 궁·능 문화재: 경복궁(칠궁 포함),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숭례문 포함), 종묘(사직단 포함) 및 조선의 능(陵). 원(園), 묘(墓)

▣ 현재는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궁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나,

▣ 궁능문화재분과 신설로, 궁·능문화재에 한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궁능 활용 심의 등 각 분과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1일 이후 현상변경 등 허가 및 활용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궁능문화재분과 위원회 신설·운영

- **추진배경** 궁·능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통합적 정책수립 역량 강화와 함께 현상변경, 궁능 활용 심의 등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 **주요내용** 궁·능 문화재 기본계획, 현상변경 등 허가와 궁능 활용심의 등
  - 궁·능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궁능 관람, 활용 등 심의에 관한 사항
- **시행일** 2021년 5월 1일(예정)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농림·수산·식품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55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21년 1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합니다.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현황 분석, 면소재지와 큰 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 · 마을정비와 축사 · 공장 등 이전 · 집적화하여 농촌공간 정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종합계획 수립 지원

교육 · 컨설팅 지원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5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유도 정책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After

'21년 1월부터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다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 제외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57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After

'21년 1월부터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58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시행일 : 2021년 3월

'21년부터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59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 · 실증 기능을 집약해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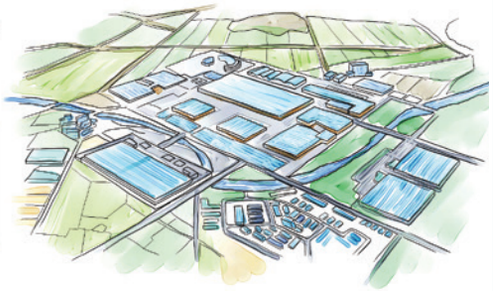

6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60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시행일 : 2021년

'21년부터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 · 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 시스템 배포: '22년

7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61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Before

기존에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는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After

'21년부터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합니다.

('20) 시범적용 : 양파, 마늘, 사과 → ('21) 시범적용 : 주요 채소 · 과수로 확대

8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6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시행일 : 2021년

Before

기존 축산물 도매시장 경매는 대면 거래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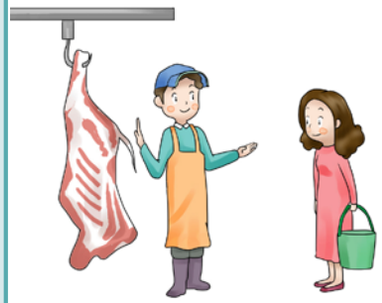

After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고 가축질병 예방, 유통비용 절감등을 위해 '21년부터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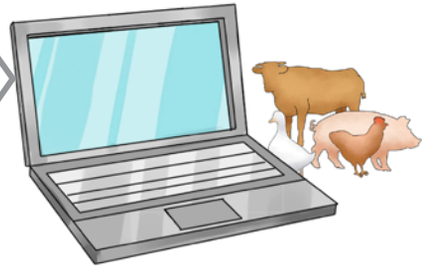

('21) 플랫폼 구축 → ('22) 시범 운영

9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76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30일

Before

기존에는 불특정 · 아날로그 정보를 통해 선장 판단에 의존한 항해를 해왔습니다.

After

'21년부터 맞춤형 디지털정보를 제공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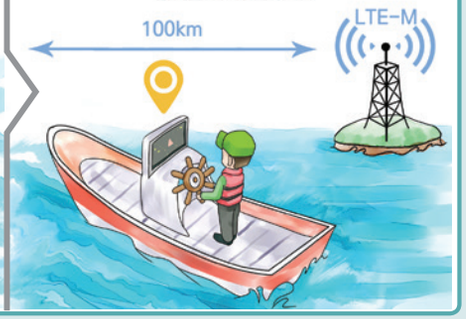

10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77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Before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 증가와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과 어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After

'21년 3월부터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 사는 수산업 · 어촌을 만들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됩니다.

11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78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1년부터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12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79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1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한 조세감면이 시행됩니다.

-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해양환경규제 시행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

연안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유류로 저황유인 경유를 구입 시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5%(78.96원)을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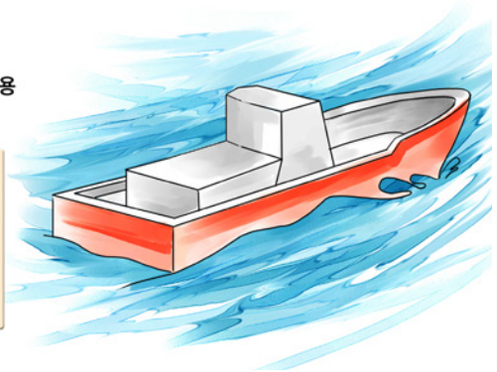

13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0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기존에는 선박 등 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습니다.

After

'21년부터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14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1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Before

종전에는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After

'21년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을 확대합니다.

15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2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시행일 : 2021년

Before

내항선박에 대하여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과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을 적용하고있습니다.

After

'21년부터 황함유량과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16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3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1년부터 원양 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휴식시간보장
임금 지급 지연 X

http://whatsnew.moef.go.kr

17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4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지역개발과(☎ 044-201-1516, 1556)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합니다.

▣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합니다.

▣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예정) 또는 공모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시범사업

- **추진배경**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현황 분석, 면소재지와 큰 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와 축사·공장 등 이전·집적화하여 농촌공간 정비
- **주요내용**
  - (농촌재생뉴딜) 농촌 난개발의 원인인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을 이전·집단화하는 등 농촌공간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농촌공간 분석·진단) 농촌지역의 난개발 정도와 정주여건 취약성 등을 분석·진단하여 지자체의 농촌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지원
  - (농촌재생 확산 지원) 지자체·주민 주도의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4)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추진배경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 주요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 -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4)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지원조건 :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1)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이상 입원, 2)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4)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추진배경 사고·질병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주요내용 취약농가에 인력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 지원 -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40)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합니다.

* 농촌체험활동(일손돕기·영농실습), 주민화합활동(마을가꾸기·지역간담회), 현장견학(선도농가·선배귀농인) 등

▣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세부시행계획 등 확정 후 게시 예정)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추진배경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이주전에 원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응력 제고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주요내용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 지원 • 시행일 2021년 3월 예정(현재 세부시행계획 마련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044-201-2423)

'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 '21년 상반기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1년 하반기 : 경남 밀양, 전남 고흥

▣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마트팜 혁신밸리 검색(완공시점에 배포예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추진배경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 • 주요내용 •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 전문지식 습득 및 경영실습 후,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으로 연착륙 유도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 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1년 하반기(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시)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27)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21년 시스템 구축, '22년 배포)

▣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1년 구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첫발 뗐다(대한급식신문 보도, '20.8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 • 주요내용 : • 거래시스템 :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공급자의 재고 관리 기능과 급식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 • 관리시스템 :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 • 정보서비스 : 공공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정보 제공 • 시행일 : 시스템 구축기간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시스템 배포 : '22년)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1)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20) 시범적용 : 양파, 마늘, 사과 → ('21) 시범적용 :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됩니다.

▣ 온라인거래 품목 확대는 2021년 하반기(잠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정책분야별 자료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 추진배경 : 농산물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며 도매단계에서도 ICT를 연계한 온라인거래로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화 도모 • 주요내용 :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에서 ICT 기반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유통체계 구축 -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 시스템 구축 및 종합유통정보 플랫폼 마련 (~'22) • 시행일 : 2021년 하반기(신규 사업체계 구축 및 품목 확대 적용)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2)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하였습니다.

▣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도입 필요
- **주요내용**
  - 온라인 경매시스템 개발 및 도매시장 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21)
  - 현장 경매에 온라인 거래 방식 도입 및 시범 운영 ('22: 1개소, '23(누계): 2~3개소)
- **시행일** 플랫폼 구축 :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8)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전문상담·관리를 지원합니다.

▣ '21년에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광장〉 자료실〉 알림마당

농업분야 외국인여성 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 **추진배경**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주거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 : 빈집 등 마을 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실태조사 : 해당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및 빈집현황 조사
  - 상담관리 : 전문상담사·통역사가 방문하여 생활·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5)

두류·맥류 재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고, 실수요업체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국산 두류·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합니다.

- 대상 품목 :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 사업 시행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대상 :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지원 기간 : 5년 이내
- 지원 기준 :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의 세부일정,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 실시	• 추진배경 : 국산 두류·맥류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실수요업체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기반 확충 • 주요내용 : • 대상 품목 :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 사업 시행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기준 :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율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개선됩니다.

▣ 해외 곡물사업(생산·유통)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곡물사업 융자(신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 현행 : 모든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 개정 : 곡물 1.5%, 기타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 추진배경 : 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자율 인하 추진 • 주요내용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금리 2.0%) 지원조건 개선 - (현행) 모든 품목 2.0% → (개정) 곡물 1.5%, 기타 품목 2.0%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8)

축산법 개정 시행('21.3.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하락 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 설치·운영

- **추진배경** • 생산자가 축산물(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오리)의 수급조절과 협의회 개최 및 논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주요내용**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자문하는 사항
  -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9)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 그간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하였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및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공고는 '21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예정)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분야에 집중된 고유의 연구사업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가축 생산효율성 증진 : 수입 대체 사료 개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축산시설·환경 개선 : 축산악취 저감기술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 (바이오가스 등), 동물복지 시설 개발 등
-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6)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 막걸리, 한국와인 등 생산자 단체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전통주 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 식품산업이나, 전체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산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생산자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확대, 품질향상, R&D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년 전통주 자조금 시행 보도자료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 추진배경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주요내용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확대, 품질향상, R&D 등을 통한 전통주의 가치 제고 및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2)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하였습니다.

▣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료관리법 개정 보도자료('20.2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 추진배경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 주요내용 •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비료·원료 확대 -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와 그 원료 •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시행일 2021년 8월 12일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개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합니다.

▣ 농업분야 및 ICT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 등 119 세부과제

▣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스마트팜 융합·원천 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온실·축사 등을 스마트팜으로 한정해, 2세대 스마트팜 현장 실증·고도화 및 3세대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집중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해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합니다.

▣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및 내구성 향상, 기능성이 부여된 농업용 필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작물보호제 원제·제품 국산화, 농업용 기능성필름 등 국산화

▣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의 국산화 및 대체재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 주요내용 • 작물보호제원제·제품국산화 :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지원 • 농업용기능성필름등국산화 : 내구성 향상, 기능성(유적성, 광투광성 등)이 부여된 농업용 기능성필름 국산화 등 개발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의 고도화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으로 '목질계바이오에너지산업화'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합니다.

▣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농산업에 활용가능한 고효율 연료를 개발하고 에너지화 과정에서 생산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산업화 촉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 소재 개발 등

▣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농산업 현장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산을 위해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활용 기술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
• 주요내용	목질계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 소재 개발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유해선충으로 인한 토양환경파괴, 대형생태계파괴, 산업생산력 저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으로 '유해선충제어바이오소재개발'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합니다.

▣ 유해선충 감염으로 발생되는 농산업 생산력 저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해선충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AI/시스템생물학 기반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발굴 및 방제소재 개발 등

▣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배경	최근 환경, 농업 등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유해선충 및 유해 해충(모기, 닭진드기 등)에 인한 피해 발생으로 급격한 산업 생산력 저하 및 공공보건 위협 문제 발생
• 주요내용	친환경 유해선충제어 바이오소재 및 방제 소재 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81)

자체 연구개발 및 투자여력이 낮은 종자기업이 육종방식을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전체 및 다양한 형질(오믹스)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종자 품종을 개발하는 기술

▣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종자기업에 생물정보기업 전문 컨설팅,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기능성성분 분석 등 디지털육종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본사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시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종자기업 20개소는 사업내용에 따라 디지털육종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분석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디지털육종전환지원 사업

- **추진배경** 전통육종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육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분석 지원
- **주요내용**
  - 디지털육종 컨설팅 : 디지털 데이터를 육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정보기업 컨설팅 지원
  - 맞춤형 분석서비스 : 대용량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기능성성분 분석 지원
  - 디지털육종 플랫폼 : 디지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IT H/W, S/W,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및 서비스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5)

축산용 생균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로 축산생균제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 축산생균제 지원은 2~3만두의 규모로 지원 예정입니다.

▣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하여 최적의 활용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3회에 걸쳐 효과분석을 하여 장내미생물 변화,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축산 악취물질 저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 **추진배경** 축산용 생균제 이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최적의 활용모델 개발
- **주요내용**
  - 사업시행/운영 : 지자체 / 미생물 연구·산업화 전문기관이 함께 사업단 구성하여 운영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매년 마을 또는 축산단지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규모 : 2~3만두 규모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예정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044-200-6142)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 까지 LTE급 통신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전국 기지국 263개소)을 구축하여 해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보이용 혜택을 넓혀가겠습니다.

▣ 바다에서도 e-Nav 앱 및 e-Nav 선박 단말기를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가 목적지를 쉽게 안내받고, 해양안전·기상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 1월부터 바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바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게이션을 제공 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20.8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선박운항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운항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①충돌·좌초 예방 지원 서비스 ②최적항로 지원 서비스 ③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서비스 ④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시행일** 2021년 1월 30일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1)

'21년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됩니다.

▣ 수산공익직불제도란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직불금 지급대상은 ①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 ②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 ③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 ④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입니다.

* 지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은 추후 해양수산부 누리집, 사업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20.5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 **추진배경**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
- **주요내용**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 어촌계 자격이양 고령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이행 어선어업인, 친환경인증·배합사료 사용 양식어업인, 도서·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 지급
- **시행일** 2021년 3월 1일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8)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 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별 친환경등급(1~4등급)을 부여합니다.

▣ 이러한 친환경 등급은 친환경선박 건조 시 자금을 우선지원하거나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국내 친환경 기술·제품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국가인증 친환경선박 건조(또는 교체) 시 보조금 지원('21년 40억, 선가최대 20%)

▣ 인증제도는 이용자의 편의, 자료보안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증신청서 제출, 진행사항 관리(제출여부, 평가 진행상태 등) 및 온라인 문서관리(인증서 위변조 방지) 등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

참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20.1.1 시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20.1.1 시행)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 추진배경 국내 기업의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 주요내용 • 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별 친환경등급(1~4등급) 부여 • 사용자 편의, 자료보안,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포털시스템*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5)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해양환경규제 시행*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한 조세감면이 시행됩니다.

* 황함유량 기준 :「해양환경관리법」 '21년부터 0.5%로 강화, 「항만대기질법」 0.1%로 강화

▣ 유류세 감면대상은 연료유를 ①고황유(중유)에서 저황유(경유)로 전환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②기존에 경유를 사용했던 선박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연안화물운송사업자는 '21년부터 연료유로 경유를 사용 시 ①유류세보조금(ℓ당 345.54원)과 ②조세감면(유류세의 15%, 78.96원)을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어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04.25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 경유유류세(528.75원) – 유류세보조금(345.54원) – 조세감면(78.96원) = 선사부담(104.25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안화물선 연료유 (경유) 조세감면	• 추진배경 선박환경규제 시행('21)에 따라 고황유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고황유에서 저황유로 전환하는 선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연안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유류로 저황유인 경유를 구입 시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5%(78.96원)를 환급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16)

중소 해운항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선박 등 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일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계약이행보증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존) 자산 취득 목적의 차입 보증 → (확대)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 다만,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산담보부채무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은 법률이 공포한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보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관련 상품개발 완료 후 사업공고 예정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과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 ('20.11.19.)

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중소 해운항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주요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 확대 - 현행 :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개정 :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5)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

▣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가능해 집니다.

*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20% 이상

▣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입주도 허용됩니다.

* 우선입주는 국내복귀 이전의 해외매출 비중(진출한 해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시 가능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과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 ('20.11.19.)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 추진배경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지원
• 주요내용	•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에 국내복귀기업 포함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입주 허용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올해에 예정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황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습니다.

▣ '22년 이후에 검사를 받는 선박도 '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내항선의 디젤기관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 그간 '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기관을 '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질소산화물 배출기준 1」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 올해 5월 20일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2」에 부합하는 디젤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규칙」 제32조[별표21의2]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추진배경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자 도래
• 주요내용	•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최대 3.5% → 0.5%) • 내항선 기관 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준1 → 기준2)
• 시행일	•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21.1.1 이후 검사일부터, '21.12.31 限) • 내항선 기관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21.5.20 이후 교체 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3)

원양 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그동안 외국인 어선원들이 임금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임금지급 지연,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수수료 부담 전가, 임금지급 지연이 없도록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1일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도 보장토록 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일 최소 10시간, 1주일 최소 77시간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발표('20.12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 추진배경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 주요내용	• 외국인 어선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송출업체 관리 강화 •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2)

선적공간 부족,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는 선적공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원양국적선사의 '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45%를 우선 제공하게 됩니다.

▣ 원양국적선사는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매월 2척(8천TEU급)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이상을 우선 제공하게 됩니다.

▣ 원양국적선사는 기존 미주항로 운용선박의 해외기항지 배정 선복량 중 매주 350TEU를 조정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화물 수요를 접수받아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게 됩니다.(하단 설명박스 참고)

▣ 상기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진됩니다.

참고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원양국적선사(HMM)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사업

- **추진배경**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한국발 미국 수출물량이 있는 기업
    * 수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물량만으로만 구성된 물류주선업체
  - 항로 및 지원 선복량 : 미주항로(부산→LA→오클랜드) / 매주 350TEU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시행일** 2021년 1월 1일(수출기업 애로 해소시까지 지속 지원)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 044-200-6174)

낙후된 어촌·어항지역의 재생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추진합니다.

▣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지가 '20년 190개소에서 '21년 250개소로 확대되며, '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19년에 선정된 3년차 사업 대상지 70개소도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삼시세끼 촬영지로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만재도는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종선(從船)으로 승하선(6시간 소요) → 뉴딜사업 후 선착장 준공(2시간 소요)

▣ 또한,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을 담은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 낙후된 어촌·어항을 '가고 싶고,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어촌·어항법」 제47조의2

어촌·어항재생개발 계획 수립

- **추진배경** 어촌뉴딜300사업 이후의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필요
- **주요내용**
  - 어촌·어항재생 수요 도출에 따른 어촌·어항재생 추진 전략 마련
  -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향후 10년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시행일** 2021년 6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044-200-548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 수산식품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법률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 주요내용은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식품산업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 ▣ 법률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됐다('20.1.1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추진배경**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주요내용** 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②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③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
-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0)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어촌계원 가입자격 정비

- **추진배경**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에 따라 동 제도와 연계하여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추진
- **주요내용** 「수산직불제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이양받은 경우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아니어도 어촌계에 가입 가능
- **시행일** 2021년 3월 1일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3, 5542)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융자 지원이 가능한 대상 어업인을 늘리고, 지원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 Total allowance catch :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 융자 예산은 전년 보다 14% 확대하여 지원하고, TAC 참여어선의 증가로 대상 어업인도 확대됩니다.

*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백만원) : ('19) 8,274 → ('20) 8,274 → ('21) 9,450

▣ 융자지원 대상자를 상·하반기로 분할 모집하고, TAC 참여어업인의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법률 시행으로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 법률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2021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융자) 사업	• 추진배경 : 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 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0%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40)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중)을 조정하였습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중)을 신설·강화·삭제하였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개정('20.9.22 공포, '21.1.1 시행)

▣ 금어기 3종 신설, 금지체장(중) 3종 신설·7종 강화와 더불어 이원화되어 있던 대구 금어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어종별 개정내용〉

① 살오징어 정치망 금어기 신설(4.1.~4.30.)과 금지체장 강화(12cm→15cm)
② 가자미 4종 금지체장 신설·강화(20cm, 시행 후 3년간은 17cm 적용)
③ 청어 금지체장 신설(20cm)
④ 삼치 금어기 신설(5.1.~5.31.)
⑤ 감성돔 금어기 신설(5.1.~5.31.)과 금지체장 강화(20cm→25cm)
⑥ 넙치 금지체장 강화(21cm→35cm)
⑦ 대문어 금지체중 강화(400g→600g)
⑧ 대구 금어기 일원화(1.16.~2.15.) 및 금지체장 강화(30cm→35cm)
⑨ 강원도에 한정되어 있던 미거지 금어기 삭제 및 제주도 넓미역 금어기 고시에 따른 조정 가능 근거 마련
⑩ 참문어 금어기 신설(5.16~6.30, 시·도 고시에 따라 5.1~9.15 중 46일 이상 따로 지정 가능)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금어기·금지체장 개정 보도자료('20.9월)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 추진배경 : 산란기 어미물고기·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 주요내용 : • 신설·강화 : 살오징어, 대문어, 감성돔, 넙치, 가자미4종, 청어, 삼치, 대구(금지체장), 참문어 • 조정 : 대구(금어기 일원화),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미거지(삭제)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6)

연근해어선 사고예방 및 어업생산 기반 시설 구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 근해 3개 업종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연안어선까지 대상 업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 (기존) 근해 3종(선망·권현망·쌍끌이) → (확대) 근해 전업종(21종)+차세대 표준선형 개발 연안·구획어업 5개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

▣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어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은 우선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예산사업관련정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 추진배경	연근해어선의 사고예방 및 어업생산 기반 시설 구축 강화
• 주요내용	• 기존 근해 3개 업종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연안어선까지 대상을 확대 – 현행 : 근해 3개 업종(선망·권현망·쌍끌이) – 개정 : 근해 3개 업종+근해 18개, 연안 5개 업종(추가) = 연근해 26개 업종 • 다만, 기존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어 주변국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은 우선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9)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금액이 전년도 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약 3배 확대됩니다.

* 친환경 부표 보급 목표량 : ('20년) 200만개 → ('21년) 570만개

▣ 이를 통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발생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양식장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본 사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추진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추진배경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폐스티로폼 등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양식장 환경 개선
• 주요내용	기존의 스티로폼 재질의 양식장 부표를 친환경 재질의 부표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 70% 지원(어업인 부담 30%)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2)

수산생물 질병 방역 및 수출입 수산물 질병 검역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됩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중인 수산생물 질병 방역*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어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대한 제반업무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 됩니다.

* 수산생물 질병 예찰, 방역에 대한 교육 및 양식장에 대한 투약·검사 등

- 이를 통해 수산생물 질병검사 및 교육,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등 제반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생물 질병 방역업무와 함께 처리하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인·허가 업무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 추진배경	이원화 되어있는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를 일원화 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관리 효율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주요내용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여 수행중인 수산생물 질병 방역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 시행일	2021년 3월 1일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4)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기존에 항만용역업을 등록 시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을 등록하더라도 자본금과 함께 선박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 다만, 항만의 특성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이 불필요한 업종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기준 완화 가능

▣ 이에 따라, 선박의 소유가 필수적인 통선업 및 급수업 외의 항만용역업*은 선박 없이도 자본금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경비업, 줄잡이업, 청소업, 오물제거업, 소독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화물고정업, 칠업

** 다만 항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마련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월 보도예정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정비	
• 추진배경	항만용역업 등록 시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을 등록하더라도 선박을 갖추도록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
• 주요내용	경비업, 줄잡이업, 청소업, 오물제거업 등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은 항만용역업 등록 시 선박 소유 기준 완화
• 시행일	2021년 1월중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6162)

국내항해선박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소화기의 수압시험(매 10년) 적용대상을 전체선박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국제항해선박에만 적용하던 수압시험 대상을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전체선박(1~4종선*)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제1종선: 국제항해용 여객선, 제2종선: 비 국제항해용 여객선, 제3종선: 여객선 이외 비 국제항해용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제4종선: 제1~3종선 이외 선박

▣ 모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 비치된 휴대용소화기*를 용기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마다 전체 용기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받거나 신규소화기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간이식, 휴대식, 이동식 등 고정식소화장치 이외의 소화기

▣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최초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됩니다.

선박용 휴대용 소화기의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휴대용소화기의 수압시험을 전체 선박으로 확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국내항해선박의 화재안전성을 높임
- **주요내용** 선박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매10년 주기) 적용대상을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전체선박으로 확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 또는 중간 검사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044-200-5985)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 연안 지역별로 태풍, 해일 등 재해발생 위험과 사회적 취약성*을 종합 분석하고, 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 연안지역 인구(고령인구, 장애인구 등), 건물·도로·산업단지 분포 등을 고려한 민감도

** 재해 발생위험에 따른 지역별 위험정도를 1등급(낮음)~5등급(높음)로 평가

▣ 또한, 연안재해위험평가 결과가 다양한 정책*에서 반영되도록 하여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 이용·개발 계획 수립 등의 경우, 평가결과 고려 필요

▣ 개정내용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연안관리법 제34조6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로부터 대응 능력 강화
- **주요내용**
  - 연안재해 발생에 따른 지역별 위험정도를 분석하는 연안재해 위험평가 시행
  -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 등
-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044-200-5982)

항만재개발 공공성 확보와 추진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항만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기준이 시행됩니다.

▣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21.1~)하여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 수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지구로 계획, 공공시설 면적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

▣ 또한, 사업 조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특화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PA관할 항만의 항만재개발은 PA 우선 추진 검토, 지자체 참여 활성화 등

** ① 원도심활력제고형, ② 해양산업육성형, ③ 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 **추진배경** 항만재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2021~2030년)
- **주요내용**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주요 특징
  - ①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구상을 제시하고, 수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지구로 계획
  - ② 항만재개발 전체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면적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
    - * 공공시설 위주 개발 필요 사업은 50% 이상, 복합개발 필요사업은 30~40% 수준
  - ③ 사업 조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제시, 검토 목적, 배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만재개발을 유형별*로 분류 등
    - * ①원도심활력제고형, ②해양산업육성형, ③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044-200-5921)

지방관리항만의 개발·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권한 및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명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8. 공포, '21.1.1. 시행)으로 지방관리항 관련 사무를 시·도로 이양함

*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 지방관리연안항 18개소

- 항만개발사업 시행, 준공,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항만개발사업 대행,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지도·감독 등 지방관리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이에 따라 향후 시·도에서 지방관리항 인접지역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 내 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항만법 개정

- **추진배경**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항만관련 정책결정 및 서비스 제공 촉진
- **주요내용**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개발, 관리 및 운영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 지방관리연안항 18개소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7)

수산물 소비쿠폰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작년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사업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390억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할인쿠폰 발행) 대형 유통업체·온라인몰 310억원, 재래(전통)시장 60억원(지역 할인행사) 11개 광역시·도 자체 할인행사 개최 20억원

▣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된 전국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점(1.2만여개)에 60억원을 지원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자체 할인행사 개최를 위해 11개 광역시·도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 (참여 지자체) 부산·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비급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월 설명절 할인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 **추진배경**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월별 소비부진 수산물 및 제철 수산물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 추진
  -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 수산물 판매업체 할인 지원
  - 지자체별 축제와 연계한 지역 특산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 **시행일** 2021년 1월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044-200-6225)

해양수산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케일업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先민간투자 유치로 시장성이 검증된 7년 이내 해양수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 (창업초기(1~3년)) 4개사, 2년간 최대 6억원 / (창업중기(4~7년)) 4개사, 2년간 최대 10억원

▣ 또한,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 중인 R&D 연구성과를 기술창업에 적합한 기술로 업그레이드(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 (유망기술) 8개 기술, 2년간 최대 4억원

▣ 추후 자세한 사항은 '21년 1월 예정인 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투자 강화로 경제 활력 살린다 ('20.9월)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 **추진배경** '先민간투자, 後정부매칭'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既확보 R&D 성과의 고도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 촉진
- **주요내용**
  - 시장성이 검증된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추진 기술개발 지원
  -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 중인 R&D 연구성과를 기술창업에 적합한 기술로 업그레이드(리모델링)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공모예정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044-200-5301)

해양쓰레기 관리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참여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반려 해변* 사업, 지역경관 개선,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개인·기업·단체 등이 해변을 선택하여 반려 동물을 돌보듯이 정화활동 등 관리

▣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시범사업('20.9 ~)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5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시행('20.12.4),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선박 건조**(7척, '21년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하천관리청에 폐기물 해양유입 방지 조치 의무 부과, 해양폐기물 종류별 관리주체와 관리방법 규정 등

** 전남·경남 각 2척, 충남·전북·경북 각 1척 / 척당 75억원('20 ~ '21)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반려해변에서 쓰레기 청소 어때요' 보도자료('20.9.18)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 **추진배경** 민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참여 플랫폼 구축, 지역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기업·단체 등의 해양쓰레기 관리 참여 유도
  - 해변 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경관 개선, 교육·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포상 및 부상 수여, 우수 참여자 인증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2021년 5월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044-200-5673)

해양바이오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타겟소재 발굴을 지원합니다.

▣ 해양바이오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단기 실습중심 교육*을 제공합니다.

* 해양생물 기능성분 추출·분석, 해양바이오 제품화를 위한 필수장비 운용기술 등('21~, 주 1회, 2~3개월 이내)

▣ 또한 약 9천여종의 해양자원을 대상으로 기초효능(생리활성)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합니다.

* 그간 확보한 국내자원(8,000여 종)과 새로 확보할 공해상 자원(1,000여 종)을 대상으로 항암, 항바이러스 등 산업계 수요가 높은 유용 소재를 발굴('21~'25)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소재정보 분석사업 신설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배경** 영세 해양바이오 기업들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자체 여력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해양생물 기능성분 추출·분석 등 해양바이오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제도에 대한 단기 실습교육 제공(신설)
- **시행일** 교육기관 공모('21.3), 교육훈련 제공('21.5~)

소재정보 분석사업

- **추진배경** 해양소재는 활용 역사가 짧고 유효성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기업들이 제품화 연구 및 사업화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주요내용** 항암, 항바이러스, 항염 등 주요 기능에 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능(생리활성등급)을 분석하여 기업 등에 정보를 제공
- **시행일** 연구자 선정('21.3), 기초효능 800건 DB구축 및 소재 분양('21.12)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5)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문별 전략 및 세부시행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로드맵은 수립 예정 시점인 2021년 4분기부터 적용됩니다.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추진배경**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 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향 제시
- **주요내용**
  -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세부 시행과제 마련
- **시행일** 2021년 4분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51)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이 시행됩니다.

▣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조사, 연안·어촌 주민 지원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에 해양치유 센터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해양치유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완도(총 320억, '22년 완공), 태안, 울진, 경남 고성(센터별 340억, '23년 완공)

** 해양치유 상용화 기술 개발, 4차 산업기반 치유센터 운영시스템 개발 등(총 66억원, '21~'25)

▣ 「해양치유자원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20.1월)

해양치유 관광기반 마련

- **추진배경** 해양관광 활성화 및 국민 건강증진·복지 향상
- **주요내용**
  - 해양치유지구 지정·지원,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운영, 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23)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21~'25)
-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044-200-5303)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 해양수산부(총괄), 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통상자원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

▣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조정·협력 및 갈등해결, 법령·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등에 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 해양폐기물 문제가 기후변화에 준하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유엔환경총회(UNEP) 등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제 규범 마련 방안 논의 중

▣ 개정내용은 2021년 하반기에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 보도자료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 추진배경 해양폐기물은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 유입,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 • 주요내용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 • 구성 :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관련 전문가 등 • 기능 :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조정·협력 및 갈등 해결, 법령·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등을 심의·조정 • 시행일 2021년 하반기

해양환경교육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1)

해양환경교육의 전국단위 교육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동교실 차량을 전국단위 권역별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 남해권('16년, 1대) → 수도권·서해권('20년, 각1대) → 강원·경북권('21년, 추가1대)

▣ 온라인을 활용한 해양환경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해양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해양환경교육원(https://www.merti.or.kr) 및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https://www.merti.or.kr/nmeec) 홈페이지에 "(가칭)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신설하여 별도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

▣ 개정내용은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해양환경교육 확대	• 추진배경 이동교실 차량 부족으로 미수혜지역의 지속적인 교육요청 발생 • 주요내용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추가 제작(3대→4대, 전국 권역별 운영) • 해양환경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 시행일 2021년 하반기

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1)

바닷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닷가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 그동안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지번조차 없는 '주인 없는 땅'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 앞으로 전국 바닷가를 무인항공장치와 위성지도 등을 활용하여 위치·경계·면적 등을 조사*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해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 (연안관리법 제34조의7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중략)~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 바닷가 등록제 도입으로 국민들이 바닷가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바닷가의 무분별한 이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상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연안관리법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바닷가등록제 도입	
• 추진배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바닷가 관리를 위해 바닷가 현황 조사 및 등록·관리
• 주요내용	전국 바닷가의 위치·경계·면적 등을 조사·측량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연안정보체계에 등록·관리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5)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이 해양보호생물로 신규로 지정되어,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거나 국제적·학술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 앞으로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해양생태계법 제61조) 해양보호동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한 경우 119 또는 해양경찰 신고를 통해 구조·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관리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상반기부터 적용됩니다.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 추진배경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국제적인 보호가치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보전
• 주요내용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의 해양보호생물(現 80종) 신규 지정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044-200-5676)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 기존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배양체는 균주별(해양미생물, 수산미생물 등) 분양수량이 상이하게 (15mL, 1mL) 분양되거나, 실제정량 기준이 없어 피분양자의 자원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추출물의 경우 1회 분양수량의 해석이 모호하여(1회 1점 1mg or 20mg) 분양신청 과정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 ▣ 이에 분양 승인 수량의 정량기준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연구에 필요한 최소수량이 분양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하반기(잠정) 이후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접수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 규정 정비

- **추진배경** 분양승인 수량기준이 모호하고 연구현장 요구 반영
- **주요내용**
  - 배양체 : 1회당 최대 20균주, 연간최대 50균주 → 1회당 최대 20균주 (각 1mg 이하, 단, 해조류는 각 100mg 이하), 연간최대 50균주
  - 추출물 : 1회당 최대 20점(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50mg 이하) → 1회당 최대 20점(각 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
- **시행일** 2021년 하반기(잠정)

"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 063-238-072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치유농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을 통해 농업·농촌자원의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농가 수익 창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며, 치유농업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 ▣ 치유농업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홍보〉보도자료〉치유농업 본격 추진('20.3월)
국가법령정보센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보급 추진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실행 등을 수행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도입 및 양성
-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환경·기상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214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Before

일부 역사에서 실시간 측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After

모든 지하역사(승강장)에 자동측정기가 설치되고 측정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215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시행일 : 2020년 12월 25일

Before

기존에 분리배출은 최소 4종 이상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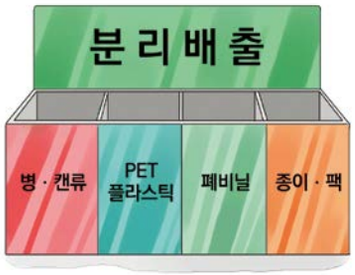

After

'21년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3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216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17년 부터 '20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부터 반도체 · 알코올음료 제조업 등 6개 업종에까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4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230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시행일 : 2021년 11월(시범운영)

Before

지금까지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체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After

'21년부터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합니다.

· 단기예보 : +3일 후 → +5일 후, 1시간 단위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7)

'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3. 공포, '21.4.1. 시행)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1년 4월부터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도시철도 및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19.4.3. 공포, '21.4.1. 시행)	•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6)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였습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8)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20.12.25부터 단계적(先공동주택 → 後단독주택)으로 전국에 확대됩니다.

*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20.12~21.6) 운영

▣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제2호(통합배출시 분리수거 품목)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 운영 가능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20.6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추진배경 '20.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전 세계적 재생원료 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계적(先공동주택 → 後단독주택) 전국 확대 시행 - 공동주택 별도 수거함 설치 및 단독주택 전용봉투 배부 등 • 시행일 2020년 12월 25일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7)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1년부터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에까지 적용됩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 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http://ieps.nier.go.kr)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계획

- **추진배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 **주요내용**
  - (기존) 10개 개별허가 → (현재) 1개 통합허가
  - (기존) 획일적 기준 적용 → (현재)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
- **시행일**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 ('17.1.1.부터) 발전, 소각, 증기공급
  ('18.1.1.부터) 철강, 비철, 유기화학
  ('19.1.1.부터)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비료, 질소화합물 제조
  ('20.1.1.부터) 펄프, 종이, 전자제품
  ('21.1.1.부터)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044-201-7222)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그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한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는 등 행정절차가 미흡하였으나,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 예규)

▣ 규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신청반려 사유(자료 미보완 및 반복 이의신청)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업무처리 방지 및 행정절차 명확화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행정규칙〉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제도 개요

- **생태자연도 제도 개요**
  (목적) 자연환경을 생태적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토지이용 등에 활용
  (수행) 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 위탁(시행령 제52조의2)
  (기초자료) 전국자연환경조사, DMZ·백두대간 조사 결과 등
  (구분) 보전가치에 따라 1·2·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 자연공원,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활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등에 활용
- **규정개정 관련**
  (주요내용)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서식, 반려사유, 처리기한) 등 명확화
  (시행일) 규정 개정 즉시(2020년 11월 23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4)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하여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됩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여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됩니다.

* (현행)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난연제 2종 등 6종 → (추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프탈레이트 4종의 추가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20.11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제도 강화	• 추진배경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 신규 출시되거나 사용량이 증가하는 제품을 사용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 • 주요내용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23종을 추가 (현행 26종 → 개정 49종)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프탈레이트계 4종을 추가 (현행 6종 → 개정 10종)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프탈레이트계 물질 추가는 2021년 7월 1일)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3)

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반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코로나바이러스 등 인수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존) 다람쥐, 살모사 등 3속 565종(589종) → (개정) 과일박쥐(익수목 전종), 밍크(족제비과 전종) 등 4목 23과 1속 추가(4목 23과 4속 303종(9,390종))

▣ 수입·반입 허가 제도의 운영시 부족했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 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 여부)의 검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수입·반입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야생동물 유입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주요 야생동물 감염병(ASF, AI, SFTS, 코로나바이러스,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을 매개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신규 지정 •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 여부) 검토 의무화(살아있는 야생동물, 알·혈액 등 생산품 대상)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부 자연공원과 (☎ 044-201-7312)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유지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자연공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말함

▣ 그동안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은 '자연공원 지정 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 '21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매수청구대상이 확대됩니다.

-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 가능
-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수청구 가능

* 자연공원 보호 등을 위해 공원내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설명〉"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20.6.2)"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대상 확대	• 추진배경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 매수청구권 확대 • 주요내용 • 공원 내 매수대상이 되는 사유지의 범위 확대 * (종전)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 * (변경) ①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종전 공시지가 요건 삭제) ②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81)

주민의 알권리 강화 및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1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 및 (부처)행정예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용성 강화	• 추진배경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시기 명확화* * 사업계획 확정 이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전 • 환경영향평가 시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의 활용을 권장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44-201-7055)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범위를 댐 하류·하구 위주에서 댐 상류까지 확대하여 하류 지역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상류지역에서 미리 예방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류로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습니다.

- 하지만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책임과 환경오염 피해를 하류 지자체·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댐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면관리자로서 댐 내 부유쓰레기 위주로 처리하였으나, 댐 상류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는 미흡

▣ '21년에는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하여 쾌적한 하천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쓰레기 차단막, 수거장비 확충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 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쓰레기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추진배경** 지속 발생되는 댐 상류 쓰레기는 상시 민원발생 유발 및 하류 쓰레기 대량 발생의 주원인
- **주요내용**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 현행 : 지방자치단체(댐 하류 쓰레기 수거 위주)
    - 개선 : 지방자치단체 + 민간수면관리자(댐 상류 쓰레기 수거 추가)
  - 지역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활용으로 쓰레기 수거량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차단막·수거장비 확충 사업 추진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21, 7023)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이 적용되며,

▣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1162호)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851호)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COD → TOC)

- **추진배경** 하수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표를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0.2.24)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중 COD 실험분석장비를 TOC 실험분석장비로 대체(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20.11.17)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TOC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TOC 실험분석장비 구비 필요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에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실험분석장비 등 포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상수도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044-201-711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등 상수도관망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됩니다.

▣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가 신설 되어 전문기관에 의한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 대행 등 체계적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021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178호)

상수도관망관리 강화를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추진배경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등 신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및 상수도 시설 배치 기준 도입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3)

기존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려는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 '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을 '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등록하는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조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조기등록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면제	• 추진배경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 유도 • 주요내용 •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에서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면제 • 시행일 2020년 12월 17일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6)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승인이 면제됩니다.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추진배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3)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됩니다.

▣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 앞으로는 두 제도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받으면 됩니다.
- 작성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예정이며,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자료 제출 의무에 따른 중복 자료작성 부담 등 해소
• 주요내용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 *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 (개정)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및 작성부담, 처리기간 단축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3)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정보 중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며, 승인 신청 시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최대 9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는 환경부에서도 승인받은 것으로 상호 인정됩니다.

참고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자료실〉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실무가이드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제도 시행	
• 추진배경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호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및 CMR 물질: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보제공 • 건강·환경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승인을 받은 경우 정보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환경 유해성 없는 화학물질: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판단하는 경우 정보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승인 불필요)
•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044-201-7622)

주민 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됩니다.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폭 넓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154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추진배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나, 법령 미비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에는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 02-2181-0496)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합니다.(2021년 11월 시범운영)

▣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여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구분		단기예보			중기예보							
예보대상일		*오늘+1	+2	+3	+4	+5	+6	+7	+8	+9	+10	+11
예보 시간 단위	기존 ('20)	3시간 단위			12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개선 ('21.11.)	1시간 단위					12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추진배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와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기상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
- **주요내용** • 단기예보 예측기간을 +3일 후 → +5일 후까지 연장하고, 예측단위를 3시간 → 1시간 단위로 상세히 제공
- **시행일** 2021년 11월(시범운영)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02-2181-0889)

기상현상증명* 지점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동기상관측 지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기상현상증명은 법원, 보험사, 관공서 등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활용

▣ 기존 100여 개 대표관측지점만 제공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 개의 관측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합니다.

▣ 민원인이 원하는 지역에 보다 가까운 관측지점의 기상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민원 및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상현상증명 발급자료 확대

-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국지성 기상현상이 빈발해짐에 따라, 대표관측지점만으로 기상현상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 도처에 위치한 자동관측지점의 기상자료 활용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자동기상관측 자료까지 기상현상증명 확대: 100여 개 지점 → 600여 개 지점
- **시행일** 2021년 2월 1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237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시행일 : 2020년 10월 16일

Before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수업 등) 증가로
Wi-Fi 주파수 추가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After

차세대 Wi-Fi를 통해 5G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GHz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41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Before

기존에는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을 확대 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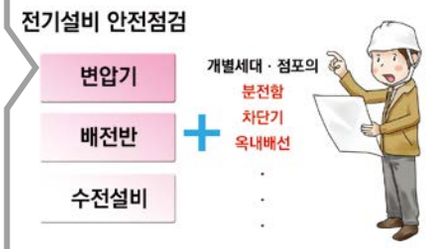

3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42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Before

기존에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관리체계에서
2단계(적합, 부적합) 등급으로 적용 관리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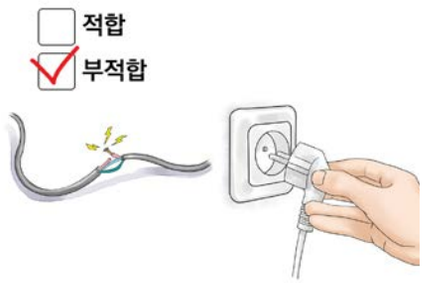

After

'21년부터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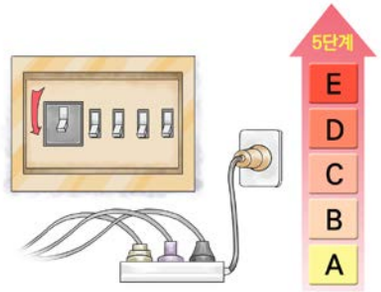

4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43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Before

지금까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 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After

'21년부터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249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시행일 : 2021년 2월 12일

Before

지금까지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벤처확인유형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After

'21년 2월부터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6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53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시행일 : 2021년 4월 21일

Before

지금까지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호 받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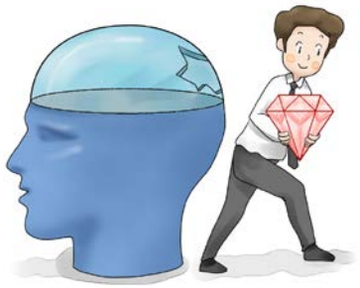

After

'21년 4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 044-202-4929)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수업 등)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Wi-Fi 주파수로 6㎓ 대역 1,200㎒ 광대역폭을 조기 공급합니다.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하여 차세대 Wi-Fi(6E) 등 신기술로 활용 가능해집니다.

〈 현재 Wi-Fi와 6㎓ Wi-Fi 비교 〉

	현재 Wi-Fi	6㎓ Wi-Fi
실측 성능	(속도) 400~600Mbps, (지연시간)2~14ms	(속도) 2.1Gbps, (지연시간)2ms
주파수 폭	663.5㎒ 폭	1,200㎒ 폭 추가
실 사용 채널폭 및 수	80㎒ × 2개	160㎒ × 7개 추가

▣ 이번 6㎓ 대역 주파수 공급으로 5G급 성능의 Wi-Fi(6E) 사용을 통해 대국민 통신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5G 세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에 Wi-Fi(6E)가 탑재된 휴대폰, AP 등이 출시 예정입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과기정통부, 6㎓ 대역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공급 보도자료('20.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과기정통부, 6기가헤르츠(㎓)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20.10월)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Wi-Fi 주파수 추가 공급 필요
- **주요내용**
  - Wi-Fi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6㎓ 대역 비면허 주파수 공급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0월 16일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044-202-6457)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정보보호지침 준수를 권고하도록 정보보호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안에 관하여 취약한 점을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유도합니다.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융합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 **추진배경** 정보통신융합 가속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대책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제조·수입자로 정보보호지침의 권고 대상 확대
  -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044-202-673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체계화되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 동 법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모든 국가R&D사업에 적용됩니다.
  ※ 부처 직접수행사업, 국방 등 일부 사업은 예외 적용
- ▣ 또한 연구과제의 정산이 2~3년 주기(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연구비 사용계획이 간소화되며, 부처마다 다른 정보시스템이 통합되는 등 연구자 친화적으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20.5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홈페이지(www.rndlaw.kr)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추진배경**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별 R&D 관리규정 체계화
- **주요내용**
  - 모든 국가R&D사업의 추진은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 단계별 정산,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정보시스템 통합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 개선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과 (☎ 044-202-6182)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 환경을 구축합니다.

▣ 부처·사업·연구자별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기술혁신을 촉진합니다.

* 생화학분석, 이미지(영상), 임상 및 전임상, 유전체, 분자구조, 표현형 정보 등

**국가 바이오 R&D 사업을 통해 생산·활용되는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연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 등에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 플랫폼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기 존	개 선
• 연구자, 사업단별 데이터 수집·관리 • 해외 DB 의존	• 국가 차원에서 통합 수집·공유 • 해외 DB와 연계해 다양한 데이터 활용

▣ 연구현장과 함께 데이터 공유 양식을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툴 등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저장·공유·활용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합니다.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20.7)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 **추진배경** 국가 바이오 R&D의 데이터를 통합 수집 및 활용 환경 제공
- **주요내용**
  -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선진적 데이터 활용 인프라 제공
- **시행일** 2021년 하반기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272)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합니다.

▣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 다만,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나,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전통시장) 매1년마다 1회, (공동주택) 매3년마다 1회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안전관리법 제정('20.3월)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안전관리법(공포번호 제17171호)('20.3월)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추진배경** 공동주택 세대 및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전통시장에 대해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개별세대·점포까지 전기안전점검을 확대
    *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배선, 콘센트 등
  -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매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2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3년마다 1회 실시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272)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기존에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됩니다.

*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안전관리법 제정('20.3월)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안전관리법(공포번호 제17171호)('20.3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추진배경 전기설비의 환경적 요인 등 운영관리 상태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전기안전정보 제공 및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 • 주요내용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 안전등급제도를 도입·시행 * (기존) 적합, 부적합 2단계 → (개선) A ~ E 5단계 • 전기설비의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의 변경 지정이 가능하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혜택 제공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중견기업*도 투자·융자 등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됨으로서,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24호)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견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근거 명확화 • 주요내용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또한,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렇게 시행되는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공포번호 제17533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규정 정비

- **추진배경**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및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게 설치 후 3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
-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044-203-4205)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인력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인력의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도 정비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산업발전법(공포번호 17530호)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정비

- **추진배경** 근로자들의 산업환경 변화 적응 및 업무능력 지속계발 필요
- **주요내용**
  -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등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 044-203-5193)

열공급시설(열수송관)의 검사기준(사용전검사, 정기검사)을 강화합니다.

▣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일부에서 전체개소로 확대하며, 현장점검 시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최근개정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 추진배경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안전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전체개소로 확대 • 현장 점검 시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점검 체계 구축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 044-203-5193)

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준공 20년 이상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장기사용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최근개정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추진배경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주요내용	•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60)

소비자의 안전한 비비탄총 사용을 위해 비비탄총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국내 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발사 방해물이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제조·수입업체는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를 막는다('20.11월)
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20.11월)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 **추진배경**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하여 출시하는 경우, 발사 방해물이 쉽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필요
- **주요내용**
  - 비비탄총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한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 발사 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성인의 평균 어깨높이 1.3(±0.1)m로 규정하고, 발사 지점으로부터 5m 이상 비행 시 발사로 판정
  - 표시사항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 표시 의무 추가
- **시행일** 2021년 5월 1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4425)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시행 '21.2.12).

▣ 기존 벤처기업 확인 유형인 ① 벤처투자 유형, ② 연구개발 유형, ③ 보증·대출 유형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 또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을 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부담이 완화됩니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주도로 개편'('20.5월)

민간주도 벤처확인 제도 전면 시행

- **추진배경**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발굴
- **주요내용**
  - 민간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
    - 벤처 확인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으로 대체
  -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3966)

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하여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됩니다.

▣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후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했으나,

▣ '20.10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 미이행시 공표,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를 조치하게 됩니다.

* 하도급법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20.10월)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행정조치 강화	• 추진배경 불공정거래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 • 주요내용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제' 도입 - 현행 : 직권조사 후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 개정 :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서는 기존과 같은 행정조치 •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3966)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뿐이었으나,

▣ '20.10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위해 15일간의 내부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납품대금협의를 진행하면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20.10월)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 추진배경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및 성과 확산 • 주요내용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협의 주체 : (당초)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 (개정)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중기중앙회 •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8)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1.4월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 (현행) 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소진공) 후 지역신보 방문 → (개선) 온라인 신청(소진공) 후 지역신보 방문

▣ (제출서류 간소화)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Info-Box*를 도입하여 수요자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해 활용합니다.

* 수요자 동의 후 대출 관련 주요 금융·비재무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시스템

▣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합니다.

〈 비대면 대출시스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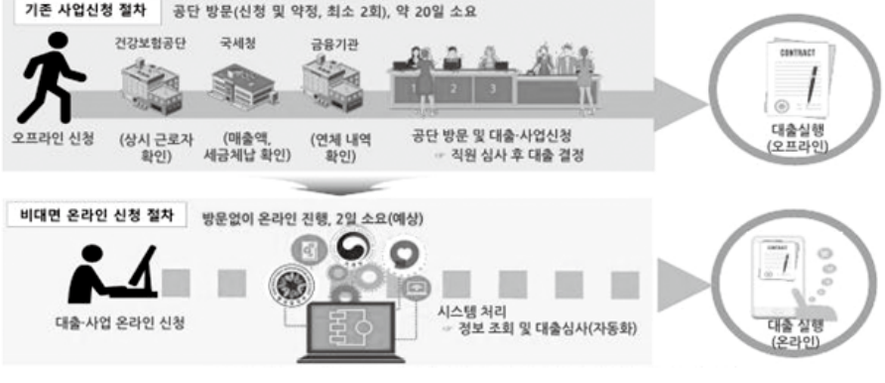

* 현장평가 진행시 추가일정 소요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42)

앞으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공포·시행」 보도자료('20.10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추진배경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함
	•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42)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제 부정경쟁행위를 한자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식재산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공포·시행」 보도자료('20.10월)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 **추진배경**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사실을 특허청 홈페이지 및 언론기관 등에 공표 가능
-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824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심사받아 획득할 수 있는 일괄심사제도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 기존에는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을 통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이나 동일한 사업과 관련된 경우로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구분	기 존	개선
제품 관련		
판단	· 각 제품과 관련된 기술을 묶어 제품별로 각각 일괄심사신청을 해야 함	· 유사한 여러 제품(제품군)과 관련된 기술을 묶어 한 번에 일괄심사신청 가능

▣ 더불어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대상에 추가되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 초기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유사한 여러 제품(제품군)과 관련되거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디지털서비스분야, 다양한 지재권 한꺼번에 획득 가능(게시일 '20.12.7.)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 **추진배경** 디지털 기술이 융복합된 무형의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 사업 진행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
  -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출원도 신청대상에 추가
  - 특허청 방문 없이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시행일** 2020년 12월 8일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716)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수수료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실용신안)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주체)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
(대상수수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 산학협력단·공공연구기관 등 중소기업과 빈번히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들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체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누구든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출원하면 수수료 50% 감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과 타 주체간의 공동연구를 장려하여 산업발전 촉진
	• 주요내용 • 감면대상 주체를 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로 확대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 실안신안등록료에도 수수료 감면 제공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후 시행예정)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602)

이제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종전에는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노출 방지로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이 수월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 추진배경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602)

이제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됩니다.

* 2차원(2D) 파일: TIFF, JPEG, 3차원(3D) 입체파일: 3DS, DWG, DWF, IGES, 3DM

▣ 종전에는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 최초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최초 2차원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2차원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였습니다.

▣ 이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어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 보정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디자인 출원 쉽게 바뀐다! 보도자료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 추진배경: 최초 3차원(3D)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최초 2차원(2D)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차원 보정이 불가한 점 등 보정의 제약이 있음 • 주요내용: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 허용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602)

이제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의 제출이 허용됩니다.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디자인

** TTF(True Type Font)는 글자체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글꼴 파일포맷으로, 문자 크기를 변화시켜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됨

▣ 종전에는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 · 제작한 후, 디자인 출원 시에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제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디자인 출원 쉽게 바뀐다! 보도자료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 추진배경: 글자체 도면 요건이 타 물품에 비해 엄격하여,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도면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 주요내용: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 허용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602)

이제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 ▣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었으나,
- ▣ 이러한 기재사항 허용으로 디자인 공보를 통해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어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디자인 출원 쉽게 바뀐다! 보도자료

등록디자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 추진배경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 기재 허용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602)

이제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디자인 일부심사가 가능해집니다.

- ▣ 종전에는 의류, 패션잡화류, 사무용품류 등 3개류(제2,5,19류)에만 일부심사가 가능하여 이들 품목 외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물품임에도 일부심사를 받을 수 없어 신속한 권리확보가 어려웠습니다.
- ▣ 이제 디자인권자는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제1,3,9,11류)에 대해서도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부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심사 대상품목 비율이 17%에서 35%로 증가되고 관련분야의 신속한 권리확보가 이루어져 기업의 경쟁력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유행이 빠르다구요? 디자인 등록도 빨리 해드려요.(게시일 '20.11.30.)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 추진배경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물품에 대하여 일부심사 대상품목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제1,3,9,11류)에서도 일부심사등록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보건·복지·고용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3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신설합니다.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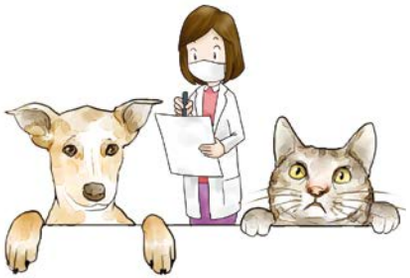

•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7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종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으로 생계급여 사각지대 발생

After

'21년 1월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7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4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77

기초연금 지급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5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78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종전에는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격차가 있었습니다.

After

'21년부터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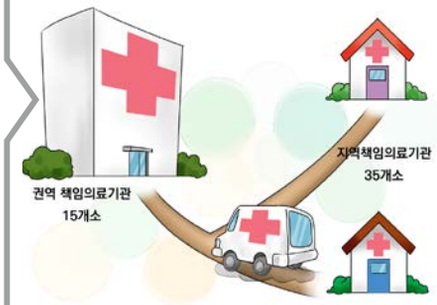

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296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7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297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298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왔습니다.

After

'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합니다.

9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299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 납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 '20년부터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

After

'21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300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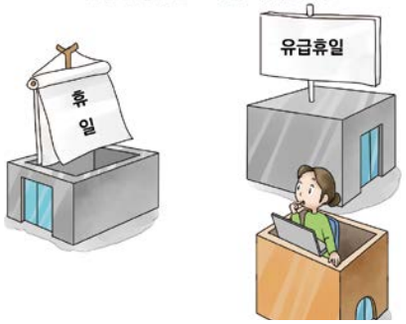

After

'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11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30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16일

Before

그동안 MSDS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고 사업주의 판단으로 비공개 하여왔습니다.

After

'21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기재 심사제도」를 시행합니다.

1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14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Before

기존 경력단절을 고려한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 및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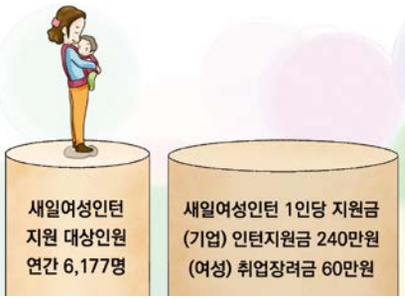

After

'21년부터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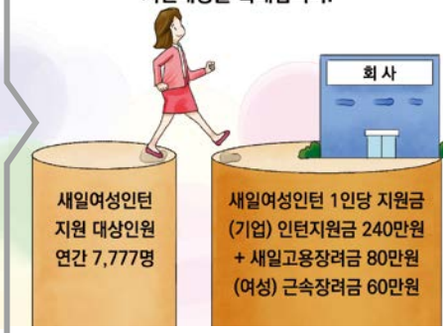

13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315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After

'21년부터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316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공급을 위한 인프라 마련
- 임상시험의 양적 · 질적 성장을 유지 ·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계획 신속승인 및 국제기준에 맞는 환자안전 · 권리보호 인프라 지원 필요

중앙심사위원회 통합심사

투명한 정보공개

첨단장비 도입 특수실험실 건축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318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시행일 : 2021년

Before

지금까지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과 식습관 개선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After

'21년부터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더욱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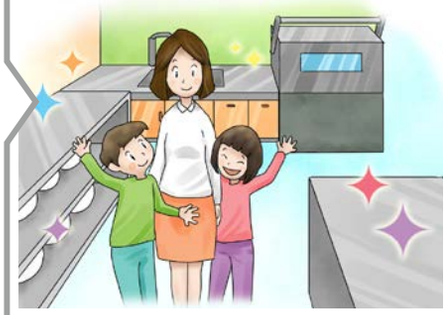

16 질병관리청

자세한 내용은 p.325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코로나19 대응으로 기존보건소 접종을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시적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17 질병관리청

자세한 내용은 p.326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20년부터 취약계층 노인 · 노숙인 대상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작하였습니다.

- 흉부 X 선검사(실시간판독)
- 당일(익일) 객담검사(결핵의심소견시)

After

'21년부터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대상을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18 질병관리청

자세한 내용은 p.327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Before

일부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지원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2)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주요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9)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가 시행됩니다.

▣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유통되는 계란(식용란)을 생산하는 닭

▣ 그간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만 소독·방제 대상이었습니다.

▣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농가의 부담경감 및 준비를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행됩니다.

▣ 참고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의 기준을 마련
- **주요내용** • 다음 농가는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함
  -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1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 됩니다.

*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소득분배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통계 자료원 변경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 산출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가갑니다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추진배경**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 적용 보장성 강화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배포 예정(12월 말)

장애인연금 개요	
•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천원) 이하 • (급여)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 *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문의	보건복지자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장애인)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6)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 '20년 기초연금 지급액 : (소득하위 40%이하)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이하) 월 최대 254,760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확대	
• 추진배경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주요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현행 : (소득하위 40%)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254,760원 지급 – 개정 :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3, 2537)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합니다.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협력사업 예산 [국비기준] : ('20) 권역 국립대병원 12개소(24억), 지역 지방의료원 29개소(26억) → ('21) 권역 국립대병원 등 15개소 (40억), 지역 지방의료원 35개소(65억)

▣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 ①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②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③ 감염 관리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대

- **추진배경**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9.11.11)
- **주요내용**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추진
    -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합니다.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지원(지원요건)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

▣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를 1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확대합니다.

* ('20년) 5,000명, 7,321백만원 → ('21년 정부안) 13,400명, 27,854백만원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 **주요내용**
  - (지원규모) 5,000명 → 13,400명
  - (가입기회) 2회 → 4회(변동가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 02-6261-2883)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10년~)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며, △민 · 관의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 시스템은 '22년 본격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며, '21.9월부터 일부 기능인 기존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를 우선 시행합니다.

* '21.9월 기존 복지수급자 대상 우선 개통 → 전체 국민 대상으로는 '22년 개통(복지멤버십을 희망하는 개인 · 가구의 가입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필요)

▣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는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복지사업이 350개가 넘는 상황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할 때 현재는 인터넷이나 책자 등을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 앞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드리게 되며,

▣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몰라서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자: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9,000명('21년) – 서비스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100시간(단가 14,020원)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대상자: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학생 10,000명('21년) – 서비스내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4,020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419, 3381)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 실행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 본 개정 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보도자료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추진배경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 취약 • 주요내용 •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 •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1)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서비스 및 양육지지 제공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연제구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21년 시범보건소를 추가로 공모하여 총 50개 보건소로 확대·운영 됩니다.

▣ 2021년 1월부터 시범보건소 추가 공모, 선정, 전담인력 채용, 교육 등의 일정을 거쳐 7월부터 확대된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 추진대상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주요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심리사회적 평가를 통해 일반군/고위험군 분류 – 일반군 임산부 대상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을 통한 산후 우울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교육 * 산모건강관리 및 정서적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확인, 수유교육 등 상담 제공 – 고위험군* 임산부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교육 제공하여 사례관리 *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관련 경험 등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3)

2021년부터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에 따라 처음으로 슈퍼바이저 10명을 시군구에 1명씩 배치합니다.

▣ 10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배치된 슈퍼바이저*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의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지도·조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슈퍼바이저) 아동통합사례관리 경력 5년 이상으로, 슈퍼바이저 기본·심화교육 이수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슈퍼바이저 자격검정을 통과한 전문가

**(제도) 슈퍼비전 업무 공식화 및 슈퍼바이저 직위 신설, 월 20만원 수당 지급 등

▣ 이번 슈퍼바이저 배치를 통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사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공 슈퍼비전 첫 제도화('20.7월)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추진배경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주요내용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현행 : (신설) – 개정 : 10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슈퍼바이저 각 1명 배치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20년 10만대 → '21년 20만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주요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 시행일	2020년 6월 2일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1년 ~ '23년, 총 125억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사용성 등을 실생활기반 리빙랩(Living-lab)을 통해 실증하고,

▣ 개발된 ICT 기반 기술 및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044-202-2451)

디지털치료제, 정밀의료 등 첨단 의료기술이 조기에 의료현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 기회 부여,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

▣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되고,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 · 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추가)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 (기존)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 (개정)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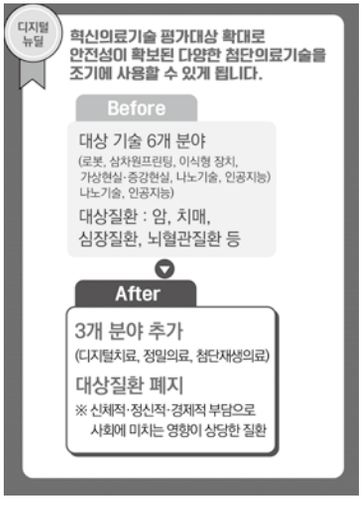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빨라진다('20.11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 **추진배경**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추진사업
-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기존 6개에서 디지털치료제, 정밀의료 등을 추가하여 9개로 확대
    - 현행: 6개(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 · 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 개정: 6개 + 3개(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추가) = 9개
  -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
    - 현행: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 개정: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
- **시행일** 2020년 11월 10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4)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 (적용 전)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입원·외래 10%

▣ 확대된 질환의 산정특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추진대상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산정특례 적용(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원추각막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규 지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5)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합니다.

▣ 환자의 진료·영상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되어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이루어집니다.

-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이 확보되어 환자 안전성이 제고되고,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 중복적인 검사와 영상 촬영이 감소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기대됩니다.

▣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17개 행정구역)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를 유도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합니다.

-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연계를 촉진하여 환자 진료 성과를 최적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합니다.

▣ 앞으로 의원간에도 협업이 필요한 전문 진료과목 간의 의뢰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 추진배경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및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 주요내용	• 전자적 방식으로 진료정보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종합병원급(전문병원 포함) 이상으로 의뢰시 수가 가산
• 시행일	2020년 11월 1일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3)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유전자검사(핵산증폭검사)

▣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이 면제되던 것에서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소견이 발견돼도 이후 추가 진료로의 연계가 미흡하고, 고가 확진 검사에 대한 비용부담도 장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이에, 결핵 추가 확진검사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적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핵의 추가전파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도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함)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지원	
• 추진배경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지원
• 주요내용	•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을 면제하던 것을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 확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1년에 흉부(유방)('21.上)·심장('21.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응급·중환자('19.7월), 남성생식기('19.9월), 여성생식기('20.2월), 안과('20.9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흉부(유방)('21.上)·심장('21.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21년 상반기에 흉부(유방), 하반기에 심장 초음파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7)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

구분	신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현행 (개월)	생후 14~35일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

▣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정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 각 1회 → 해당 연령대(20~70세) 1회 수검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다만, 본인 동의시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유아 신생아기 검진 추가 등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 **추진배경**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과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7차 → 8차)

구분	신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현행 (개월)	생후 14~35일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

  - 정신건강검진(우울증) 검진 주기 개편
    - (현행)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 연령 1회
    - (변경) 만 20~70세 각 연령대 중 1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폐결핵 건강검진결과 활용
    - (현행)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변경)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044-202-2843)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21년 4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습니다.

▣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강위생검사는 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아동의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해 제공서비스로 포함함

▣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총 4만 5천원 외래 진료비 포함) 중 약 7천 5백원을 지불합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 **주요내용**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 의원을 6개월마다 정기방문하여 문진·시진, 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교육, 예방처치 또는 선택적 치료를 받는 사업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2)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1)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위기(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를 확충합니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 205명 신규 확충('17년~'20년 1,370명 기 확충 지원), 자살예방 전담 인력** 260명을 증원('20년 207명 → 467명)합니다.

*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례관리·사회복귀 훈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

▣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합적·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20년 7개 시·도 → '21년 12개 시도) 시행합니다.

*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체계 확충	
• 추진배경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
•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문인력 확충(205명) 및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260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시행('20년 7개 시·도 → '21년 12개 시·도)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인력 충원은 2021년도 내 지속 추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 △단가(원) : ('20) 13,500 → ('21) 14,020 △이용자수(천명) : ('20) 91 → ('21) 99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합니다.

*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3천명, 단가 1,500원

▣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장애인활동지원 확대·강화	
• 추진배경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이용자 증가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확대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21년 약 400명)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 044-202-7194)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3억원 이하 (청년특례 별도규정)	X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별도 정함)	X	X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추진배경**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선정('17.5) → 경사노좆 합의('18.8,'19.3)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일자리좆 의결('19.6)
-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

구분		근로자	예술인
1.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원 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등	(좌동)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미적용
수급요건	기여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주요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좌동)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일부 (우선지원:90일, 대규모:30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추진배경**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률	2020년	2021년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월 1,078,000원 (부담기초액)	월 1,094,000원 (부담기초액)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142,680원	월 1,159,64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293,600원	월 1,312,80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509,200원	월 1,531,600원
장애인 미고용	월 1,795,310원 (최저임금액)	월 1,822,480원 (최저임금액)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 주요내용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 '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 제도 적용: 2020년~(계속)
  - 신고·납부 : 2021년~(계속)
- 시행일 (부담금 적용) 2020년 1월 1일, (신고·납부) 2021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5)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20.12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7)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MSDS: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위험성 등)를 기재한 자료

▣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그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심사 신청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용(R&D)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심사기간은 2주 이내)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20.12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 추진배경	화학물질 정보전달 강화
• 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현행 : MSDS 미제출(별도 명령시 제출), 영업비밀을 자의적 판단으로 비공개 - 개정 : MSDS 제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승인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 다만, 연구개발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체자료 기재시에는 승인 신청
•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 가입자) 지원 중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3)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실시	
• 추진배경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 (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7)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추진배경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
•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2, 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보험홈페이지〉사업지원금 안내〉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추진배경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 **추진배경**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내용) 저소득 근로자①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②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② 연 1.5%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종류	의료·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한도	1,000만원	1,250만원	1,000만원(1부모당 연 500)	1,000만원(1자녀당 연 500)	1,000만원(1자녀당 연 500)	1,000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	2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임금 범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주요내용**
  - (융자종목 추가) 총 8종 → 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행일** (융자종목 추가) 2021년 1월 중
  (융자대상 확대) 2020년 12월 8일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507)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19.1.15.)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추진배경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 주요내용 •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4)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되며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 〉

명칭	소재지	연락처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031-364-75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	052-228-5840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054-459-1150	대구, 경북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061-690-1660	광주, 전남, 제주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	063-839-5260	전북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041-661-5841	대전, 세종, 충남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043-870-5960	충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추진배경**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 · 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09)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21년부터는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 (훈련기간) 산재 직업훈련 지원(수당·비용)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 2회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추진배경**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시행일** 2021년 2월 1일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확대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을 6,177명에서 7,777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하고,

▣ 지원 대상을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하여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20.12.3)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성 강화
- **주요내용** (지원대상) 6,177명 → 7,777명
  (1인당 지원금) 300만원 → 380만원
  * ① (현행) (기업)인턴지원금 240만원, (경단여성)취업장려금 60만원
  (개선) (기업)현행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경단여성)근속장려금 60만원
  ② (새일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 시 지급
- **시행일** 2021년 1월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21년 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 (21년 기준) 82.2만원(1인가구), 138.9만원(2인가구), 179.3만원(3인가구), 219.4만원(4인가구)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現) 부모 + 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改)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며 세부 시행기준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20.7월)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보도자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추진배경**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연령 제한 규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보장필요
- **주요내용**
  -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임차급여 산정방식)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부모가구와 구분하여 적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6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 (☎ 043-719-5410)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및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국내 공급을 위해서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시험 등을 거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새로운 코로나 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가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를 지정하여 신속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1회)하여 임상시험 진입기간을 단축합니다.

* 식약처 및 의료기관(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 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이 있어야 임상시험 시작 가능

- 임상시험약의 부작용 등 새롭게 발생한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환자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 또한 임상시험 승인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출하승인과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안전·복지 등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공급을 위한 인프라 마련
- 임상시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유지·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 및 국제기준에 맞는 환자안전·권리보호 인프라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코로나19 백신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

- 특수실험실 건축
  - 코로나19와 같은 고위험군 신종감염병 원인체를 취급하기 위한 특수 실험실 건축
    * BL3 실험실과 세포배양실을 갖춘 지상 3층, 연면적 2,500㎡의 건물
- 백신 검정 시험장비 추가·신규 도입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

- (중앙심사위원회 심사) 위탁받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심사할 뿐 아니라, 다기관 임상일 경우 기관마다 실시해야 하는 심사를 중앙심사(1회)로 갈음할 수 있어 차질 없는 임상시험 진행
- (정기적 안전성 정보 보고서 자료의 평가·관리)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DSUR) 함으로써 사전 위해차단 기반 강화
- (임상시험 정보등록·공개 제도 운영)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정보등록·공개

• 시행일 2021년 내 (연중)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5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05)

전국 모든 지역의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21년도에 신규로 설치하여,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급식위생·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 교육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코로나 등으로 급식시설의 현장방문 지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급식소 자체점검 기능 강화, 온라인 교육 확대, 비대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인 이상인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 대상으로 연 1회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2021년부터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 식약처 및 시도는 50명 이상 또는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 협동조사하여 왔으나, '21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도 합동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 식약처는 국가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식중독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소 식중독 예방 강화

• 추진배경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및 식중독 예방 강화

• 주요내용

〈 어린이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원 〉

- 대상 : 어린이집 및 지역 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시설(약 40,000개소)
- 수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4개소('21년 6개소 추가 설치)
- 주요 업무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컨설팅
  - 어린이 건강상태,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어린이·조리원·교사 등 대상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

-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연중)
  - (규모) 약 16,000여 개소('20.7월 기준)
  - (내용) 보존식 보관, 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 등
  - (점검주체) 식약처(지방청 포함) 및 지자체

• 시행일 2021년 내 (연중)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043-719-2803)

2020년 12월 4일부터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화교육이 시행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 (교육기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기존의 교육대상자는 판사재량이나 법무부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모두에게 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마약류 투약 사범 의무교육 종료 후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의 개별회복지원 서비스 연계로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례관리 및 전문 집단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및 회복자상담가 등 운영

▣ 식약처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12.3.)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마련
- **주요내용**
  - (대상)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사범(투약, 흡연, 섭취)
  - (수행)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남권) 및 13개 지역본부
  - (내용) 마약 중독자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프로그램 이수
    * 기존 기초교육(26시간) 위주 과정을 심화과정 등(최대 200시간)으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2월 4일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 043-719-6256)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더욱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 해외직구식품의 부적합률이 매우 높음(7%)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가 '20년 기준 약 1,600건에 불과하여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 '21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수준(3,000건)으로 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 검사대상을 다양화하여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식약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 **추진배경** 비대면 문화 확산, 국제배송 신속화 등 증가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2배 수준(3,000건)으로 확대
  -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을 포함하여 검사대상 다양화
- **시행일** 2021년 내 (연중)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 TF(☎ 043-719-3792)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신속제품화 촉진을 위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중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

▣ 또한 인증 기업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허가 할 때에는 일부 제출자료를 면제하여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조기업 인증 및 허가특례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2021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 **추진배경**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제품화 지원
-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 수준 등이 우수한 경우 인증
  - 인증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 컨설팅 및 제조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 043-719-4167)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한 공급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미래기술(AI, 빅데이터 응용 등)이 적용된 바이오헬스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제품의 인허가에 대한 법적 지식을 배우면서 안전기술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 국내 우수한 5개 대학을 선정하여 각 대학에 5년간 연 5억원이상씩 지원할 예정이며,
- 지원받은 대학들은 식의약 분야 규제과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하여 신진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 600명(석·박사) 이상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양성된 규제과학 인력은 기업체, 연구소 등에 취업하여 안전한 제품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추진배경**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한 공급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개발 연구 지원
  - 신진연구자, 산업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공동연구, 취업지원, 평가기술 등 성과 확산 지원
- **시행일** 2021년 상반기 내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 044-204-3812)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현행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개정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7월)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 추진배경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 주요내용 (홑벌이 가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 -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84)

2021년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됩니다.(기존 256개 → 약 14,000여 개소 추가)

▣ 기존에 보건소(256개소)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2021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약 14,000개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 추진배경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통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하여 질병부담 감소 • 주요내용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 현행 : 보건소 *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 한시 확대 운영('20.6.22.~12.31.) - 개정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043-719-7313)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2만명, 6,907백만원) →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21.6만명, 7,179백만원)

찾아가는 결핵검진 개요

- **추진배경** 결핵 조기발견·조기치료,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
- **검진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거동불편 장애인
- **검진방법** 설문조사,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객담검사 실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5)

'20년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21.1월).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지원합니다('21.1월).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
헬프라인 홈페이지〉지원사업〉유전자진단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신규 희귀질환 지정에 따른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진단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1,014개 → 1,078개
  - 희귀질환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126개 → 175개
- **시행일** 의료비 및 진단지원확대 2021년 1월 1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5)

'20년 3월부터 시작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범위가 '21년 9월부터 확대 됩니다.

▣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 (변경)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지원사업〉의료비지원 온라인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편의 제공
-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대상 범위 확대
  (부양의무자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 환자 → 부양의무자 유무 관계없이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모두, 의료급여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금 대상자)
- 시행일: 온라인신청 확대 2021년 9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 043-719-7811)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을 확충하겠습니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격리·치료하여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기관 내 일반환자와의 접촉을 미연에 방지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한 신종감염병 대응 음압병실입니다.

▣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을 순차적으로 추가 구축·운영하여, 신종감염병에 감염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1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 161개 음압병실 → 16개 시도 39개 의료기관 244개 음압병실 (83개 음압병실 추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추진배경: 신종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 ·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구축
- 주요내용: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 순차적 구축 · 운영
- 시행일: 2020년 12월 부터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 043-719-7821)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존 음압텐트, 컨테이너 등 간이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물형태로 개선합니다.
※ 59개소(신축 42, 리모델링 17)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차 대응기관인 보건소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순차적으로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 **추진배경** 간이형태(음압텐트, 컨테이너 등)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개선
- **주요내용**
  - 기후영향 및 감염위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물형태로 개선
  - 감염병 대응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검사 및 진료 가능
- **시행일** 2021년 1월 부터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043-719-7136)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읍 · 면 · 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의 시행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민원정보공개〉전자공청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 **추진배경** 감염병과 관계없는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공개 제외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요내용**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읍 · 면 · 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
- **시행일** 2020년 12월 30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국토·교통

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335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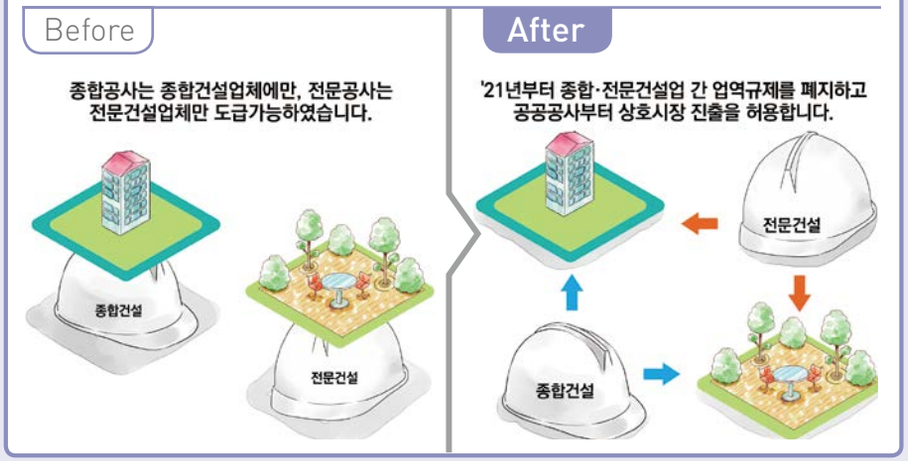

2 산림청

자세한 내용은 p.33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 2021년 6월 10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3514)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산법 시행령 개정안('20.10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건설업역 개편 설명자료('20.10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추진배경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 주요내용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 – (현행)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제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 (개정)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시장 진출 허용 •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 센터운영	2021년 1월 1일 이후(공공기관 발주공사)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됩니다.

▣ (현행)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 (개정)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4)

▣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법령 개정 추진 중이며, 건축허가 제도 개선내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 건축심의 제도 개선내용은 2021년 4월경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보도자료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안건상정('20.10.15) • 주요내용 • 건축 허가 도서 간소화(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 - (현행) 허가 신청 시 대부분의 도서를 제출 - (개정)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 • 건축 심의 대상 축소(2021년 4월경 시행 예정) - (현행)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 (개정)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 044-201-4612)

이제 전 국민은 누구나 철도안전이 위험할 때, 그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는 철도종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됨

▣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www.railsafty.or.kr (이메일) krails@kotsa.or.kr (전화) (054)459-7323

-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고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전국민을 대상으로 철도사고·준사고·장애예상요인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주요내용 사고·장애요인 발견시* 국민 누구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국토부(교통공단)에 보고토록 방법 마련(규칙 안 제86조의3) *철도사고·준사고·운행장애가 예상되는 위험 요인은 모두 자율보고 대상 ※ 전자적인 보고방법·접수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관리법('21.2.5.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 **추진배경**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결함 추정)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과징금 상향)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
  - (손해배상)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고,
    -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시행일** 2021년 2월 5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042-481-4224)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이라 한다)」이 '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새롭게 제정('20.6.9일)된 「도시숲법」은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등이 조성·관리 및 이용·참여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게 됩니다.

▣ 또한,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청은 「도시숲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시의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보도자료)('20.6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①R&D 설비(1/3/7) ②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안전 설비(1/5/10) ④에너지절약 시설(1/3/7) ⑤환경보전 시설(3/5/10) ⑥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 (최대 3) ⑦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5/7/10) ⑨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3/5/10) ⑩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기본공제율 :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추가공제율 : 모든기업 3%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공제율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 일반 : 0.5~2.7% • 3주택 이상 + 조정2주택 : 0.6~3.2% ■ 세부담상한 • 조정 2주택 : 20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 일반 : 0.6~3.0% • 3주택 이상 + 조정2주택 :1.2~6.0% • 법인 : 3.0%, 6.0% ■ 세부담상한 • 조정 2주택 : 300% • 법인 : 폐지 ■ 과세표준 • 법인 : 공시가격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21.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20%p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30%p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소득세법 ('21.6.1.) 국세청 재산세제과 (044-215-4314)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 5년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1.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 간이과세 적용범위 • 직전연도 공급대가4,800만원 미만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등은 제외 ■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 적용대상 • 해당연도 공급대가3,0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상향 •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유지 ■ 기준금액 상향 •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21.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주세 과세 대상 주류 • 주정 •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과세 제외 대상 ·알코올분 6도 미만 의약품	■ 주세 과세 대상 주류 • 주정 •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과세 제외 대상 ·알코올분 6도 미만 의약품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주세법 ('21.1.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신 설)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 허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1.1.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담배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개별소비세법 ('21.1.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추 가〉	■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은 제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2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신 설)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 보유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2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 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7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⑥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9개 업종) ⑦ 전자상거래 소매업 – 단, ①~⑥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2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율(%) 1,200만 원 이하 / 6 1,200 ~ 4,600만 원 / 15 4,600 ~ 8,800만 원 / 24 8,800 ~ 1억 5천만 원 / 35 1.5 ~ 3억 원 / 38 3 ~ 5억 원 / 40 5억 원 초과 / 42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 세율(%) 1,200만 원 이하 / 6 1,200 ~ 4,600만 원 / 15 4,600 ~ 8,800만 원 / 24 8,800 ~ 1억 5천만 원 / 35 1.5 ~ 3억 원 / 38 3 ~ 5억 원 / 40 5 ~ 10억 원 / 42 10억 원 초과 / 4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2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① (원칙) 수익자 ②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신 설)	■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 동)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대상) ①~④의 신탁(「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 중 수탁자*가 선택(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① 「신탁법」§3에 따른 목적신탁 ② 「신탁법」§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신탁법」§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 (시행령 규정) •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2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5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2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전체 –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취득기간 : '18.7.1.~'20.6.30.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 대상자산 : (좌 동) • 취득기간 : '21.1.1~'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21.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신 설)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 적용요건 :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 기업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적용기한 : '21.1.1~'22.12.31.까지 출자 등 취득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1.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20% •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적용기한) '20.12.31.	■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20% •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상 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1년 → 2년 • (적용기한) '22.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1.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 인 판단기준 명확화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 (좌 동) •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법인세법 ('21.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 ('21.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추 가〉	■ 5년 → 10년 ■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법인세법 ('21.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 (가입자) 근로·사업자, 농어민 •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자산운용)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 (계약기간) 5년 ■ (적용기한) 2021년 ■ (납입금액) 연 2000만원 한도 (최대 1억원)	■ (가입자) 19세 이상 거주자(15세이상 근로소득 있는 자 포함)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자산운용) 상장주식 추가 • 이자·배당소득에서 주식손실공제 허용 ■ (계약기간) 3년 이상 ■ (적용기한) 항구화 ■ (납입금액) 1~4년차: (2×n)천만원, 5년차 이후: 1억원	조세특례제한법 ('21.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신설	(신 설)	■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금액 2억 원, 9% 세율 분리과세 ■ (적용기한) '22.12.31	조세특례제한법 ('21.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신설	(신 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금액 1억 원, 14% 세율 분리과세 ■ (적용기한) '22.12.31	조세특례제한법 ('21.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증권거래세율 인하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21.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관보류 절차 정비	■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 •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화주의 통관허용 요청 등 세부절차 신설 •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 요청 가능 • 세관장은 통관 허용 여부(통관 불허 시 불허사유 포함)를 통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관세법 ('21.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재수출 감면대상 확대	■ 재수출감면 대상 •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국내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도 감면 허용 *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관세법 ('21.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 :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의 연장 :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재심사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함 ■ 품목분류 변경 유효기간의 연장 : 변경된 품목분류는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함	관세법 ('21.1.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반도체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중 • 액압식·공기압식 작동방식의 것은 관세 3% • 전기식 작동방식의 것은 관세 8%	■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하여 관세 3% 적용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1.1.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문(종이)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 문화비 범위 확대 • 도서 구입비('18.7월) • 공연 관람비('18.7월)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월) * 문화비 소득공제란?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 적용 (최대 100만 원, 공제율 30% 적용)	■ 문화비 범위 확대 • 도서 구입비('18.7월) • 공연 관람비('18.7월)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월) • 신문(종이) 구독료('21.1월)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2 ('21.1.1.)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4)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로 결정하여 예정고지	■ 예정고지 대상자에 소규모 법인사업자 추가('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 (대상) 직전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년 12월)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21.1.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 비영리법인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비영리법인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관할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법인〉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 ('21.1.1. 이후)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27)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신 설)	■ 분양권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	**소득세법 제88** ('21.1.1.이후 취득분부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 보유기간 연 8%	■ 보유기간4%+거주기간4%	**소득세법 제95** ('21.1.1.이후 양도분부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 방문, 우편신고만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가능	**상증법 제67** ('21. 2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52)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금융상품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개별 금융업법에서 산발적으로 운영	■ 금융상품 영업행위 규제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통합 운영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5.28.)	**금융소비자보호법** ('21.3.25.)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42)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적용대상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카지노,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 적용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 • 개정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상자산 관련 개정 보도자료 ('20.3월) ☞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21.3.25.) **특정금융정보법** ('21.5.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33)
가상자산사업자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함께, 신고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등 추가조치 이행	■ 신설 규정	■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 법 시행('21.3.25.)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접수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상자산 관련 개정 보도자료 ('20.3월)	**특정금융정보법** ('21.3.25.)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33)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	■ 특별히 선언한 바 없음	■ 인재상으로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 학습환경으로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정책형성과정으로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를 제시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1.20일)	('21)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342)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 일부 학교장 개설 과목으로 운영 중	■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 신설 * ('20.9월) 고교 진로선택 과목) 신설·고시 (旣완료) → ('21.상반기) 교과서 개발·심의 → ('21.9월~) 적용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공지능 고교 진로 선택과목 보도자료('20.9.14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제2020-237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044-203-7032)
AI 인재양성 지표개발	■ 없음	■ 정부와 각종 교육·훈련기관 대상 AI 정책, 프로그램 등 비교·분석 추진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1.20일)	('21)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342)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신설	■ 없음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사회적 의사결정기구 신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1.20일)	('21) **교육부 교육통계과** (044-203-6630)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 '20년 고등학교 2·3학년 실시	■ '21년 고등학교 1·2·3학년 실시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21)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2천원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21. 3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지원대상 -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어린이집 ※ (참고)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2020) ■ 지원인원 - 보조교사 2.7만명 - 연장보육교사 2.5만명 ■ 지원단가 - 인건비 1,002천원(1일,4시간) ■ 사업기간 - '20.3월~'21.2월	■ 지원대상 -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어린이집 ※ (참고)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2021) ■ 지원인원 - 보조교사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3만명 ■ 지원단가 - 인건비 1,011천원(1일,4시간) ■ 사업기간 - '21.3월~'22.2월	**영유아보육법** ('2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2)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수 확대	■ '20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350개소(예산 기준)	■ '21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450개소	('2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 (044-202-3361)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신 설)	■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보존식용기)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3)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대해 정부지원시간은 연 720시간, 지원 비율은 영아종일제 가형 80%, 시간제 나형 55% 지원	■ 정부지원 확대 • 지원시간 : 연 720 → 840시간 • 지원비율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1년 예산('20.12.3.)	**아이돌봄 지원법** ('21. 1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03 국방·병무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17년 최저임금의 40% 구 분 / 봉급액 병장 / 540,900 상병 / 488,200 일병 / 441,700 이병 / 408,100	■ '17년 최저임금의 45% 구 분 / 봉급액 병장 / 608,500 상병 / 549,200 일병 / 496,900 이병 / 459,100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21. 1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을 개선		■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 ■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 ■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1. 2월)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입영연기 대상 범위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생, 연수기관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 입영연기 대상 범위 :현행 대상 범위에 국위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	**병역법** ('21. 6월)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컴뱃셔츠 1벌 보급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 연 94,440원	■ 컴뱃셔츠 2벌 보급 ■ 일용품 현금지급액 : 연 138,600원	('21. 1월)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6~7)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 (냉장 전용) 신규보급		■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 14,678대를 보급	('21. 1월)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7486)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항공료 왕복 연 2회 지원	■ 항공료 왕복 연 8회 지원	**국방부 '21수송운영지시** ('21. 1월) **국방부 탄약수송과** (02-748-5758)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 육군 위주 편성 • 육군 1,749명, 해군20명 * '코로나19'로 미운영	■ 전군 확대 편성 • 육군 2,952명, 해군 20명, 공군 20명, 해병대 19명시험운용 * 총 3,011명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21. 1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 열화상카메라 설치 : 없음 ■ 마스크 : 미세먼지 '나쁨' 단계 고려 연간 50일 기준으로 지급 (약 100만장)	■ 열화상카메라 설치 : 316대 ■ 마스크 : 개인당 1매 지급(약 371.2만장) * '코로나19' 고려, 지급 확대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21. 3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 교육기간 • 육군 : 4주 • 해군 : 3주 • 해병대 : 3주 ■ 총 교육시간 • 육군 : 200H • 해군 : 145H • 해병대 : 134H	■ 교육기간 • 육군 : 3주 • 해군 : 3주 • 해병대 : 3주 ■ 총 교육시간 • 육·해군·해병대 : 150H	**병역법** ('21. 1월)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3)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1)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 출석회의 방식 원칙	■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회의 방식 도입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도자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국가유공자법시행령** ('20.12.1.)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위원회 (심사1과)** (044-202-5838)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신 설)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 *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2회 이상 위반 시) *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병역법** ('21. 1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 온라인 서비스 구축(11월) • 서울청 센터 상시상담 ('20년 7월 부터) • 찾아가는 서비스 ('20년 7회 실시)	■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확장 • 권역별 센터 추가 설치('21년 7월)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21년 15회)	**제도 개선**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2)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지원	■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한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 병무청장이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 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국고에서 지급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 ('21. 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현역 모집병 화상 면접 확대 실시	■ 비대면 사회변화 선제적·능동적 대응,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 구축 위해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도입 • '20년 공군 일부 직종 시범 실시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 공군 전면도입 및 육군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 확대	**제도 개선** ('21. 1월)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0)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 색약자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 불가	■ 색약자 조리병 지원 가능 •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 지장 없음(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제도 개선** ('21.1.1.)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0)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6,000원	■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식비 단가 7,000원으로 인상 • 여비지급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전문산업·공보의 등 입영·소집자, 동원훈련소집자 •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21.1.1.)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 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 복지 전공자-복지시설, 교육전공자-교육기관 우선 배치 ■ 각 軍별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상이하게 운영 • 육군 : 4주 • 해군 : 3주	■ 2021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복지시설, 병원 등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 ■ 군사교육소집 기간 3주로 통일하여 운영	**제도 개선** ('21.1.1.) **병무청 사회복무 정책과** (042-481-3007)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 제복의 제식과 형상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별표1]	■ 제복의 제식과 형상 등 개선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별표 1] 수정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20. 2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 신청제도 시행	(신 설)	■ 복무기관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3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 가능)	**병역법 시행령** ('21. 1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역처분기준 변경	■ 고퇴 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폐지,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병무청 고시** ('21. 2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 개발 유형: 핵심부품개발형	■ 개발 유형 :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부품 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2.5.)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20.12.0.)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동 운영규정** ('20.12.0.)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8)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5)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6)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방연구개발사업 협약 도입	■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사업에 한하여 협약 적용	■ 기술개발은 협약을 적용하고, 무기체계 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탐색개발 단계는 협약, 체계개발 단계는 계약을 적용 • 체계개발 사업 중 업체투자 또는 정부·업체 공동투자 사업으로 시제품이 즉시 전력화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협약 적용 가능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21.4.1.)
성실수행인정제도	■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	■ 기술개발 과제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성실수행인정 대상을 협약체결로 추진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 • 성실수행으로 인정받은 경우 참여 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등 제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지식재산권 정부 소유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나, 지식재산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 가능 •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종료 후 소정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 인정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89)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기획방식	■ 국과연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업무 수행, 기품원은 기획·평가 지원 ■ 미래도전국방기술 신설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기관 선정, 사업관리 등을 대폭 위임 • 기품원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 국과연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행에 집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전담기관 역할 수행 • 방산기술지원센터는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 산출된 개발성과물 관리 업무 수행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및 확인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법령 및 규정에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대다수 문서(사문서)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의 사전절차로서 국내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비용 소모의 문제가 발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 확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1.4.28.)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673)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신 설)	■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 제공 영사조력의 내용 규정 ■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여행경보 발령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21.1.16.)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조력제도팀** (02-2100-6919)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현장 출동 경찰관 대응관련 -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현장 출동 경찰관 대응 관련 -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기존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1.21.)
	■ 임시조치 관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접근금지 범위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임시조치 관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금지 범위가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 (유형 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시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	■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1년,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시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년	
	■ 법률 적용 범위 관련 -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의 죄	■ 법률 적용 범위 관련 - 기존 적용 범위 +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695)
	■ 임시조치 유형 확대 - 접근금지 등 5개 유형	■ 임시조치 유형 확대 - 기존 유형 +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추가	
	■ 수강·이수명령 병과 관련 - (제도 신설)	■ 수강·이수명령 병과 관련 -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시 형사처벌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20.10월)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행정청에 대한 소송지휘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 *소송수행,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하였던 소송지휘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 • 소송수행업무에 수반되는 소송수행해태 보고, 재판결과 보고 등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보고받던 사항도 법무부장관이 보고받도록 함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2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2.28.)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검찰에 위임된 국가·행정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소송물가액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필요 • 소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승인 • 소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검찰총장이 승인 • 소가 10억 원 이상 : 법무부장관이 승인 *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 가소송물가액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송행위 승인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 • 소가 2억 원 이상 : 법무부장관이 승인 ※ 소송행위 승인은 소송지휘의 범주에 포함되고, 행정소송 지휘권한은 법무부로 모두 이관 될 예정이므로, 행정소송의 경우 별도로 소송행위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음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2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2.28.)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신 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신설 •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혹은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사전여행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21. 6월 중)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73)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신 설)	■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11월)	출입국관리법 ('21.1.21.)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 시행	■ 법 제68조(출국명령) 제68조(출국명령) ①·② (생략) •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설)	■ 법 제68조(출국명령) 제68조(출국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11월)	출입국관리법 ('21.1.21.)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 시스템 활성화	■ 전국 47개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 6개 기관에 추가 구축하여 수용자 의료 처우 및 인권 향상 기대	의료법 제34조 ('21.7.)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 (02-2110-3388)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 지게차 운전기능사 훈련실시 (여주교도소)	■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 (지게차 과정 신설) 강원북부교도소 지게차운전과정 추가신설 • (외부출장 직업훈련) 민간 중장비 학원 연계하여 굴삭기, 로더 등 중장비 훈련직종 확대 (천안개방·군산·강원북부교도소) • (공공기관 협업 중장비 직업훈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업하에 출소전 추가 중장비 교육 실시, 출소 후 국비 실기교육 지원(여주교도소)	형집행법 ('20.2.4.) 법무부 직업훈련과 (02-2110-3410)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정부24 또는 관공서 방문신청 등을 통해 종이증명서로만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13종 제공	■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 가능하여 필요한 곳에 전송 및 활용 가능 - 소득금액증명 등 전자증명서 누적 100종 확대 제공('21)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53)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청년마을 조성 전국 확대	■ 적용대상: 전국 청년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정착희망지역을 공모받아 사업내용 검토후 1곳(사업비 6억원) 선정	■ 적용대상: 전국 청년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정착희망지역을 공모받아 사업내용 검토후 12곳(사업비 6억원x12) 선정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청년마을 조성 확대 보도자료	**청년기본법** ('21.1.1.)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044-205-345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구비서류 직접 제출 - (예시)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수혜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2~3일 낭비	■ 행정정보 중 필요 정보만 제출 - (예시)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13종)를 보유한 행정기관에게 해당 구비서류(행정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제공하도록 요구 → 정보보유 행정기관에서는 영세상인이 요구한 행정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료 전송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도자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 2월 이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044-205-2472)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개인이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단순 안내 ■ 개인(본인) 위주	■ 정부24를 통해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부24로 로그인 시 개인의 수혜이력과 신청 가능한 서비스(현금·현물 등) 안내 ('21년 300여 종 서비스) ■ 디지털약자를 위한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노인,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디지털 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개인별 맞춤 안내 제공 ■ 개인 및 동일세대 만14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하여 맞춤형 수혜서비스 신청·확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21.4.28.)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044-205-6463)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 지원율 - 주택·온실(52.5%) - 소상공인(59%) ※ 정부지원율은 최대92%까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율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율 - 주택·온실(70%) - 소상공인(70%)	('21.1.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4)
농어촌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추가	■ 농어촌민박시설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추가	**재난안전법** ('20.12.10.)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0)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 주민등록번호에 지역을 나타내는 번호가 포함됨	■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0.12.)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서비스 이용 가능	■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가능	**주민등록법 개정 중** (10.27.입법예고) **사행규칙 개정예정** ('21년)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공공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만 사용 할 수 있음	■ 공공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 사용 가능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12월 10일,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전자서명법** ('21. 1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기관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의무 부여 (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기관별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관해 자율적으로 결정	■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행안부 시스템 사용 의무 부여	**정보공개법** ('21.12.22.)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의사결정 등으로 비공개 시 비공개 단계 등 안내 (안 제9조제1항제5호)	■ 의사결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시에도 세부단계 안내에 관한 의무규정 부재	■ 의사결정,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비공개시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정보공개법** ('21.12.22.)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 강화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의무 부여	■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및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정보공개법** ('21. 12월) ※ 시행 6개월 내에 점검·개선결과 행안부에 제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안 제10조)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게재	■ 생년월일을 게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등 작성	**정보공개법** ('21. 12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심의회 설치 대상 기관 확대 및 개별심의회 민간위원 비율 확대 (안 제12조)	■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운영 • 설치 대상기관: 행정기관(305개), 공기업(35개) • 외부위원비율: 일반기관: 1/2,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기관: 1/3 이상	■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운영 • 설치 대상기관: 행정기관(305개), 공기업(35개)에 준정부기관(89개) 및 지방공사·공단(136개) 추가 • 외부위원비율: 일반기관: 2/3,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 기관: 1/3 이상	**정보공개법** ('21. 12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정보공개 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안 제22조 및 제23조)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운영 • 소속: 행정안전부 장관 • 기능: 정보공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 수: 9명(외부:5명)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운영 • 소속: 국무총리 • 기능: 정보공개 정책 수립· 제도개선,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조사·개선권고 등의 사항 추가 • 위원 수: 11명(외부:7명)	**정보공개법** ('21. 12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설)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의 결함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의 원활한 배상과 사업자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 책임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옥외광고물법개정안 보도자료	옥외광고물법 ('21.6.10.)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
정부청사 뉴딜사업	■ 에너지관리 효율화시설 구축 • LED 조명 교체(세종·대전 청사 등 17,110개 교체)	■ 정부청사 그린 뉴딜 사업 추진 • 노후 정부청사 그린 리모델링(서울, 과천, 대전청사 창호교체 및 커튼월 등 단열 공사) • 에너지관리 효율화 시설 구축(에너지 저장장치 3기 설치,LED 조명 9,293개 교체) •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18기 설치) • 공조시스템 등 미세먼지저감시설 구축 (38대 교체) • 정부청사 주면 울타리 숲 조성(큰 나무 1,000본, 관목류 29,000본 식재) • 정부청사(2단계)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옥상정원 8,201㎡ 조성) • 다중이용공간 자연친화적 공기정화 식물 조성(벽면녹화 500㎡, 그린박스 160개소 설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044-200-1152) 관리총괄과 (044-200-1135)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 장애인 접근성 관련 - (필수 5종)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점자라벨, 이어폰소켓 - (선택 3종) 화면확대기능, 휠체어탄사용자조작, 촉각(점자)모니터 • 기타 선택 규격 - 신용카드 결제 기능	■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 장애인 접근성 관련 - (필수 7종)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화면확대기능, 휠체어탄사용자조작 - (선택 3종) 촉각(점자)모니터, 음성인식기능 • 기타 규격 - (필수) 신용카드 결제 기능 - (선택)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NFC 및 QR코드 리더기 등 데이터 통신 기능 확대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진다 보도자료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KIOSK) 표준규격 ('21.7.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5)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없음	■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21.2.1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의무화	■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의무 없음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21.2.1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20. 9.2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1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간소화	■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치료제·백신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을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이 필요	■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치료제·백신 등)이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신청·승인) 폐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간소화' 보도자료	**항공보안법 시행령** ('21.2월 중)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

인사혁신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공직적격성평가 (PSAT) 도입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을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실시 -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 검정시험으로 대체 - (전문과목*)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일반행정 직류 예시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 (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필기시험을 1차 시험과 2차시험으로 분리하여 면접포함 총 3단계로 변경 - 1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한국사* * 영어·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 2차 전문과목 평가 - 3차 면접 실시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 보도자료 ☞ (참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문제/정답 안내〉7급 PSAT 모의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21.1.1.)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 **시험출제과** (044-201-8286)

인사혁신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 영어·외국어 3년 - 한국사 4년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영어·외국어·한국사 5년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보도자료 ☞ (참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시험공고/공지사항)인정기간 연장 관련 안내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인사혁신처 고시) ('21.1.1.)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 카드형태의 실물 공무원증만 사용	■ 모바일 공무원증 병행 사용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을 우선 적용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 받아 사용* 가능 * 청사출입, 신분확인 등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 디지털 전환 빨라진다' 보도자료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보도자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1. 1월)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법제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해 국가 및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無	■ 국가 및 지자체에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의무를 부여 • 관리대상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 법제처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 신설 • 민간의 법령정보 활용 지원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 개인·기업 법령정보 활용 더 쉽고 편해진다	법령정보법 ('20.12.10.)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3)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 2억원 이상 물품 입찰에 대해서 만입찰가점(2점) 적용	■ 2억원 이하 물품·용역 입찰까지 확대 적용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21.3.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302)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검 협력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 검사의 수사지휘권 존재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전부 검찰에 송치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 수단 없음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 협력 조항을 신설하여 대등·협력관계로 설정 ■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 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마련	**형사소송법** ('21.1.1.)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02-3150-164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신설)	■ 경·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절차 규정 신설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규정 신설 ■ 수사 개시에 관한 절차 규정 ■ 시정조치 요구·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의 절차를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21.1.1.)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02-3150-1646)
경찰수사규칙 제정	(신설)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수사관련 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규정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1차적 수사권자로 설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종 절차를 규정	**경찰수사규칙** ('21.1.1.)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02-3150-1646)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 (관서명) 00지방경찰청 ■ (조직)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로 구성 ■ (사무) 경찰사무를 별도구분 없이 운영	■ (관서명) 00시·도경찰청 ■ (조직)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구성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 (사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사무로 구분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 ☞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의안번호2102684〉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21.1.1.)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02-3150-0666)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21.5.11.) **경찰청 교통안전계** (02-3150-063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21.5.11.) **경찰청 교통안전계** (02-3150-0634)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1.4.17.)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

소방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 집합교육 - 50명 이내(사회적거리두기) - 집합교육 4H+사이버교육 4H - 교육기자재 활용 평가	■ 사이버교육 - 동시접속 3천명 수용 - 사이버교육 8H - 실습 동영상 및 평가문제 활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21.1.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22)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 규정 신설	■ 해당 내용 없음	■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는 법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무자격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위험물안전관리법 ('21.6.10.)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현장 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제50조 제4항)	■ 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 고시 규정 법률로 상향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044-200-4685)
조사 시간 및 조사 기간 관련 규정 도입 (제50조의5)	(신 설)	■ 사건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내에 진행 (단,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협의 후 연장 가능) ■ 사건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 내에 종료(단, 불충분한 경우 연장하되, 연장된 조사 기간이 명시된 공문 교부) * 고시 규정 법률로 상향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044-200-4685)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 신설 (제50조 제3항 등)	■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 영치가능	■ 조사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보관조서 작성 교부 의무화 ■ 조사와 관련이 없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반환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044-200-4685)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 명문화 (제52조 제3항)	■ 조사 이후 심의 단계에서의 진술권만 규정	■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명시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044-200-4685)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문화 (제52조의2 등)	■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 시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	■ 영업 비밀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료 열람·복사 허용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 (044-200-4122)
조사 결과 통지 의무 명확화 (제49조 제3항)	■ 조사결과의 서면 통지 의무만 규정	■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근거, 내용,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 (단, 의결서 작성시 의결서 정본 송부)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 (044-200-4122)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 제한 (제50조 제10항)	(신 설)	■ 심의 단계에서 현장 조사 및 당사자 진술 청취 원칙 금지(단, 전원회의·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 (044-200-4122)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심의 절차 개시 후 증거 조사 규정 신설 (제52조의3)	(신 설)	■ 심의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 가능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 (044-200-4122)
처분 시효 기준일 명확화 (제49조 제4항 등)	■ 위반행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 처분 불가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 처분 불가(단, 부당한 공동행위는 현행 유지) * 법 시행 전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기존 규정을 적용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제48조의2 제1항, 제51조의3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신 설)	■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위해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과 동의의결 신청인의 자료 제출 의무 규정 ■ 이행관리 업무의 조정원·소비자원 위탁규정 신설	공정거래법 ('21.5.2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 (044-200-412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신설)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 (신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게시일 '20.4.21)	가맹사업법 시행령 ('21.1.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 심사기준 : 공공기관·대기업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 기업 내부의 조직과 인력 대상 활동(최고경영자 리더십, CCM 관리 등)의 배점 기준이 높음 등 ■ 취소기준 및 절차 : 위원회 내부 검토를 통해 취소여부에 대한 재량을 판단	■ 심사기준 :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심사 지표 분리, 중소기업 적용이 어려운 기준의 예외 적용,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항목 배점을 상향 등 ■ 취소기준 및 절차 : 취소 여부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내·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 결정 과정 도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 예정) ('20. 12월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09)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를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미규정	■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토록 개정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게시일 '20.9.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21.1.1.)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6)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지원 확대 • 지원금 1인당 연간 9만 원 • 지원 인원 171만 명 ■ 재충전 방법 • 주민센터, 온라인(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로 신청하여 소지한 카드에 재충전	■ 지원 확대 • 지원금 1인당 연간 10만 원 • 지원 인원 177만 명 ■ 재충전 방법 • 전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 (복지시설 발급자, 전액 미사용자 등) •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전화ARS 등으로 신청하여 재충전 ☞ (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규칙** ('21.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9)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 비디오물 등급표시 ■ 내용정보표시 ■ 부가정보표시 – 비디오 제작업·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 분류번호 등 표시의무	■ 비디오물 등급표시 개선 ■ 내용정보표시 개선 * 항목별정도표시 삭제 **핵심항목만 표시(최대 3개) ■ 부가정보표시 간소화 – "비디오 제작업·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표시의무 삭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1.1.1.)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7)

문화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및 3개분과 운영(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 • (심의사항)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과 비축에 관한 사항,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2.10.)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 (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 보유자, 보유단체만 전수교육 가능	■ 전수교육을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 •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 ☞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2.10.)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	(신 설)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 기증 가능 •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수증여부 결정 ☞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0.12.10.)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5)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	■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에서 심의 •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궁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에 운영하는 각 소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등 통보	■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 •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 등 허가, 궁능 활용 심의를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통합·운영 ☞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위원회 규정** ('21.5.1. / 예정)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02-6450-3849)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 정비프로젝트' 추진	(신 설)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현황 분석, 면소재지와 큰 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와 공장·축사 이전·집적화 등 농촌공간 정비 시범 사업 실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예정) 또는 공모	('21.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지역개발과** (044-201-155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3,6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70,000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농업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2021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2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 (1일 7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56,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2021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시행지침** ('2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신 설)	■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 지원 ☞ (참고)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세부 시행계획 등 확정 후 게시 예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 3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40)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신 설)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21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마트팜 혁신밸리 검색 (완공시점에 배포예정)	('21.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3)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합 관리(수발주, 통계)하고 급식농산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부재	■ 시스템 구축 후 배포시 •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수급관리와 공급·수요자간 유기적 연계로 지역 푸드플랜 정착에 기여 • 식단·영양·안전정보 등 급식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산농산물 신뢰도 제고 ☞ (참고) 대한급식신문 등 보도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첫발떼다)	('2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7)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는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	■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 • ('20) 시범적용 : 양파, 마늘, 사과 → ('21) 시범적용 :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정책분야별 자료	('21.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 축산물 도매시장 경매는 대면거래(오프라인) • 경매장에서 소, 돼지 실물을 살펴본 후 구입	■ 구매자가 도매시장에 가서 소, 돼지 실물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상, 등급판정 등의 정보를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21) 플랫폼 구축 → ('22) 시범 운영	('2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농업분야 외국인여성 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 설)	■ 농업분야 근로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도입, 상세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 실태조사, 상담관리 등을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여성농업인광장〉자료실〉알림마당	('21.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8)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신 설)	■ 두류·맥류 재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실수요업체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산 두류·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밀산업 육성법 ('21.1.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5)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 정책자금 지원조건 • 모든 품목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정책자금 지원조건 • 곡물 금리 1.5%, 기타 품목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침 ('21.1.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신 설)	■ 「축산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 생산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축산법개정안 보도자료(예정)	축산법 ('21.3.2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8)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설)	■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 주요지원 분야 - 수입 대체 사료 개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등 가축 생산효율성 증진 사업 - 축산악취 저감기술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바이오가스) 등 축산시설·환경 개선 사업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예정)	('21.1.1. 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9)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신 설)	■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실시 *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확대, 품질향상, R&D 사업 등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년 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 보도자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1.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공정규격 준수 대상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 ■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 • 농촌진흥청장	■ 공정규격 준수 대상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 ■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 비료와 그 원료 ■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 •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료관리법 개정 보도자료	비료관리법 ('21.8.12.)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신 설)	■ 스마트팜 현장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신규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 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1.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설)	■ 작물보호제 원제·제품 및 농업용기능성 필름 등 국산화 신규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 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1.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설)	■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소재개발 신규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 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1.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 지원	(신 설)	■ 친환경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및 방제 소재 개발 등 신규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 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1.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신 설)	■ 전통육종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육종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분석 지원 - 사업시행자: 종자산업진흥센터 - 사업예산: 20억 - 지원대상: 디지털육종 전환을 원하는 종자기업	농식품부 지침 ('21.1.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1)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신 설)	■ 축산용 생균제를 지역단위로 구매비용을 지원한 후 효과분석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활용모델 개발	('21.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바다 내비게이션 시행	■ 불특정·아날로그 정보를 통한 선장판단에 의존한 항해 • 선박 위치관리의 한계로 충돌·침몰 사고대응 지연 • 음성 통신에 국한된 정보 제공 한계 및 통신거리 제약	■ 맞춤형·디지털 안전정보 제공 등 안전항해 지원 • 전자해도 자동 업데이트, 충돌·접촉·좌초 사고 위험경보 등 • 100km 해상까지 음성+화상통신 제공 및 긴급구조(S.O.S) 등 긴급 사고 대응 지원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보도자료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21.1.30.) 해양수산부 첨단해양 교통관리팀 (044-200-6142)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종 운영	■ 수산공익직불제도 도입·시행으로 총 4개의 직불제 운영 •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직불제법 ('21.3.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신규 운영	■ 친환경선박·기자재의 품질 등을 고려한 인증제도 부재	■ 친환경선박·기자재에 대한 품질검증 및 민간지원 대상선정기준에 반영 등을 위한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운영 ☞ (참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20.1.1 시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21.1.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0-4334)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감면 시행	(신 설)	■ 연안화물선이 경유 사용시 (기존경유+유종전환) 유류세 15% 감면 ☞ (참고) 12월중 보도예정	조세특례제한법 ('21.1.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	■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신용보증으로 확대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과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20.11.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21.1.1.)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6)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수출입 기준 등 충족 필요	■ 국내복귀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개상기업에 포함 및 우선입주 허용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과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20.11.19.)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1.6.9.)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최대 3.5%까지 사용 및 적재 가능	■ 2021년 1월 1일부터 선박 검사일 기준으로 황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 및 적재 불가 ☞ (참고) 해양수산 홈페이지〉보도자료〉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보도자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1.1.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내항선 기관 질소산화물배출기준 적용 변경	■ 2013년 1월 1일 이전 건조선박에 2013년 1월 1일 전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 시 •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1 적용 가능	■ 2013년 1월 1일 이전 건조선박에 2013년 1월 1일 전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 시 • 2021년 5월 20일 이후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2 적용 ☞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령정보〉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21.5.20.)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신 설)	■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수수료 전가, 임금지급 지연 금지, 휴식시간 보장 등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보도자료('20.12)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21.1.1.)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 지원 규모 • '20년까지 190개소 지원 • '22년까지 300개소 추진	■ 지원 규모 • '21년 어촌·어항 250개소로 확대 • '22년까지 300개소를 추진 및 '30년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어촌·어항법」제47조의2	어촌·어항법 ('21. 6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4)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수산식품 산업법 ('21.2.19.)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8)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어촌계에 가입 가능	■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경우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어도 어촌계에 가입 가능	수협법 시행령 ('21.3.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0)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TAC 참여어업인 경영 개선자금 확대)	■ 적용대상업종 : 13개 업종 ■ 예산 : 8,274 백만원	■ 적용대상업종: 14개 업종 * 근해자망어업 1개 업종 추가 ■ 예산증액 : 9,450 백만원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예산사업관련정보	2021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 ('21.1.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20.2.18)	■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5년),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실시, 공동체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공동체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1.2.18.)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2)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 금어기 42종, 금지체장 39종 운영	■ 14개 어종의 금어기(3종 신설·1종 삭제), 금지체장(3종 신설, 7종 강화) 조정을 통해 2021년부터 금어기 44종, 금지체장 42종 시행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금어기·금지체장 개정 보도자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2 ('21.1.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0)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 근해 3개 업종 : 선망·권현망·쌍끌이	■ 대상 업종 확대 : 근해 18개 업종+차세대 표준선형 개발 연안·구획어업 5개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 등 23개 업종 추가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예산사업관련정보	사업시행지침 ('21.1.1.)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폐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 지원 • 연간 200만개 대체(총 70억원 지원)	■ 폐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 지원 확대 - 연간 570만개 대체(총 200억원 지원)	수산자원관리법 ('21.1.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9)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2개 기관에 분산·이원화 • (수과원) 질병 검사 및 교육 (수품원) 수출입 수산물 질병 검역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21.3.1.)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 항만용역업 등록시 모든 업종은 선박을 보유하도록 규정	■ 통선업 및 급수업 외의 항만용역업은 선박 없이도 자본금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참고) '20. 12월중 보도예정	**항만운송 사업법 시행령** ('21. 1월중)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4)
선박용 휴대식소화기의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 국제항해선박(제1종선 및 제3종선)에 비치된 휴대식 소화는 용기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용기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	■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선박(제1종선~제4종선) 에 비치된 휴대식 소화기는 용기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용기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	**선박소방 설비기준** ('21.1.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6162)
연안재해위험평가 도입·시행	■ 연안지역 일부에 한하여 재해취약성 평가를 비정기적 수행	■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매년 전 연안의 위험평가 시행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연안관리법 제34조6	**연안관리법** ('21.2.19.)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5)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항만 개발, 관리 업무하도록 지정	■ 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	■ 지방관리무역항(17개소) 및 지방관리연안항(18개소)에 대한 개발·관리에 관한 권한 및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항만법** ('21.1.1.)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수산물 할인쿠폰사업 확대 운영	■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재래(전통)시장에 수산물 21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발행	■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재래(전통)시장에 수산물 21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발행	('21. 1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 해양수산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 • 시장성이 검증된 해양수산 창업 기업 사업화 추진 기술개발 지원 : 8개사 2년간 최대 10억원 •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 중인 R&D 연구성과를 기술창업에 적합한 기술로 업그레이드(리모델링) 지원: 8개 기술 2년간 최대 4억원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투자 강화로 경제 활력 살린다 ('20. 9월)	('21. 1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5)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 정부 주도의 사후수거방식의 해양쓰레기 관리 - 국민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등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 등을 몰라 어려움	■ 해양쓰레기 관리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의 사전예방적 해양쓰레기 관리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반려해변에서 쓰레기 청소 어때요' 보도자료('20.9.18.)	('21. 5월말)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1)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21.1만 톤 감축 • 해운업 19.1만톤 감축 • 어업 2만톤 감축	■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1. 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5)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 해양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별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재	■ 해양바이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습중심 재교육 훈련프로그램 신설 및 제공 * 교육내용(안) : 해양생물에서 유용한 성분을 추출, 분석하는 기술, 장비 운용 기술, 인허가 제도 등 기업 수요기반 역량	**해양수산생명자원법** ('21. 3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3)
해양생명자원 소재 활용기반 조성	■ 서식지, 종 정보(학명) 중심 기초 정보 제공	■ 소재 효능분석 및 정보 제공 신규 추진 • 기존에 확보한 해양생명자원과 공해상 자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유용효능을 분석, 기업 수요기반의 정보제공	**해양수산생명자원법** ('21. 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 대응 위원회 없음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 보도자료	해양폐기물관리법 ('21. 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3)
해양환경교육 확대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3대 (남해권, 수도권, 서해권)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교육, 학교 및 사회 해양환경교육 대면 수업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1대 추가 (강원·경북권) ■ 해양환경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대면 수업 확대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 제10조, 제18조 ('21. 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책과 (044-200-5281)
바닷가등록제 시행	(신 설)	■ 전국 바닷가의 위치·경계·면적 등을 조사·측량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연안정보체계에 등록·관리	연안관리법 ('21. 상반기)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지정	■ 총 80종 (포유류 16, 무척추동물 34, 파충류 4, 어류 5, 해조/해초류 7, 조류 14)	■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 바다거북 3종 추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상반기)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기준 개선	■ 분양수량 -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 연간 최대 50균주 - 추출물: 1회당 최대 20점 (20mg), 연간 최대 50점 (50mg)	■ 분양수량 -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각 1mg 이하, 단, 해조류는 각 100mg 이하), 연간 최대 50균주 - 추출물: 1회당 최대 20점(각 20mg), 연간 최대 50점(50mg)	해양생명자원법 ('21. 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6)

06 농림·수산·식품

농업진흥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코로나블루(우울감), 스트레스 해소 등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농업분야 제도적 기반 부족	■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근거법률 시행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치유농업 본격 추진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1.3.25.)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063-238-0722)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신 설)	■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21.4.1.)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 무색 페트병과 기타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 설치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 ('20.12.25.)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17·18·19·20년도 업종(발전·증기·폐기물처리·철강·비철·유기화학·석유정제·무기화학·정밀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종이·전자부품 제조업) 시행	■ 21년도 적용 업종(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시행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21년까지 단계적 시행)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한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는 등 행정절차 미흡	■ 규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신청반려 사유(자료 미보완 및 반복 이의신청)를 구체적으로 규정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행정규칙〉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20.11.23.)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제한 유해물질 종류 확대	■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카드뮴 :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21.1.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4)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기존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 다람쥐, 살모사 등 3속 565종	■ 추가 포함 야생동물: 영장류, 익수목(박쥐), 앵무목, 참새목, 개과, 고양이과, 사향삵과, 족제비과 등 4목 23과 1속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추가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27.)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대상 확대	■ 자연공원내 사유지 토지매수청구 대상 •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	■ 자연공원내 사유지 토지매수청구 대상 • (개선)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종전 공시지가 요건 삭제〉 • (신설)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설명〉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20.6.2)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2.10.)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2)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주민의견 수렴 관련 절차 및 방법 개선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 사업계획 확정 이전 • 주민의견 수렴 방법 : 법령에 따른 공고·공람	■ 주민의견 수렴 관련 절차 및 방법 개선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 • 주민의견 수렴 방법 : 법령에 따른 공고·공람 외에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 가능 *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 ☞ (참고)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 및 (부처)행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1. 상반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 7281)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국비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국비지원대상: 기존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수면관리자 추가 지원	물환경보전법 ('21.1.1.)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55)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 적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 구비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 대신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구비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1.1.)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 7023)
상수도 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신 설)	■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7178호)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21.4.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15-7114)
조기등록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면제	■ 등록 수수료 • 중견기업: 200,000원 • 중기업: 100,000원 • 소기업: 40,000원	■ 등록 수수료 •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2022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17.)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 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등의 살생물제만 승인 면제 ■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등의 이행 주체는 국내 제조·수입자이나, 특히 수입품의 경우에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외제조자로부터 승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곤란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등의 생활화학제품도 신고 면제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21.1.1.)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각각 제출 *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및 작성부담, 처리기간 단축	화학물질 관리법 ('21.4.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3)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단, 유해화학물질은 반드시 정보제공	■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1.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 단, 유해화학물질 또는 CMR 물질로서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1.16.)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절차 •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미비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에는 한계가 있음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절차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154호)	댐건설법 시행령 ('21.1.1.)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단기예보 -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 제공	■ 단기예보 - +5일후까지 1시간 단위 제공	('21. 11월)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6)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 100여개 기상청 대표관측지점에 대해서만 기상현상증명 발급	■ 자동기상관측 지점을 포함한 600여개 지점으로 기상현상증명 발급 확대	('21.2.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2-2181-0889)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Wi-Fi 등으로 이용가능한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주파수 • 사용 주파수 대역 : 2400~2483.5㎒, 5150~5350㎒, 5470~5850㎒	■ Wi-Fi 등으로 이용가능한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주파수 • 사용 주파수 대역 : 2400~2483.5㎒, 5150~5350㎒, 5470~5850㎒, 5925~7125㎒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보도자료〉과기정통부, 6기가헤르츠(㎓)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보도자료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044-202-4929)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제조·수입자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반 조성"	정보통신망법 ('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
	■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근거 없음	■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 5만원~1천만원의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반 조성"	정보통신망법 ('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1)
	■ IoT 제품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의 근거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IoT 제품 등 정보통신망연결기기·설비·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을 할 수 있음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반 조성"	정보통신망법 ('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부처별 R&D 관리규정 별도 운영 ■ 매년 협약·정산 실시, 연구비 사용계획 복잡, 부처별 별도 시스템 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 적용 ■ 과제 전체기간 협약, 단계별 정산 실시,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정보시스템 통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4)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 (연구자) 해외 또는 개인 보유 데이터 활용 • (정부) 부처별 일부 데이터 확보 및 관리	■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 (연구자) 정부에서 통합 제공하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기초·기전 연구, 질병 극복 연구 및 비즈니스 창출 등에 활용 • (정부) 범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제공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보도자료〉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20.7)	생명연구자원법 ('21.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 자원과 (044-202-6182)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수전설비에 한해서만 실시	■ 공동주택 개별세대 및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 25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매3년마다 실시 • 전통시장의 경우 매1년마다 실시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안전관리법 (공포번호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1.4.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은 전기적 요인(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 (적합, 부적합) 관리체계로 운영	■ 전기재해와 연관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5단계(A~E) 관리체계의 등급제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를 운영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안전관리법 (공포번호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1.4.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2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1.1.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시장혁신과 (044-203-4543)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 시공자는 연1회 사후관리 시행 의무화 • 시행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종합하여 산업부장관에게 보고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 산업부장관은 매년 보고된 사후관리 시행 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포번호 제17533호)	신재생 에너지법 ('21.4.2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근거 추가 : 디지털 전환,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이에 대한 지원가능 ☞ (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산업발전법 (공포번호 17530호)	산업발전법 ('21.4.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05)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 비파괴검사 • 열수송관의 용접이음 부분은 용접 이음 개소의 10%이상 규정	■ 열수송관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열수송관 용접부위 전체 비파과검사를 통해 용접부 결함을 발견하여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열공급 중단 예방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최근개정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1.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3)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최근개정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1.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3)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 탄속제한장치 관련 안전요건 없음	■ 탄속제한장치 부착 관련 안전요건 신설 •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이 부착된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발령번호 제2020-349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1.5.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60)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 제도 운영 *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벤처확인 유형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운영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보증·대출유형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최종 심의 • 벤처확인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 유형으로 대체하여 운영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주도로 개편' 보도자료 ('20.5.4.)	벤처기업법 ('21.2.1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대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2년간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3년간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주도로 개편' 보도자료 ('20.5.4.)	벤처기업법 ('21.2.1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수·위탁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후 행정조치 강화	■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조치	■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중첩영역의 경우 기존과 같이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조치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20.10.20.)	상생협력법 ('21.4.21.)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있음	■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20.10.20.)	상생협력법 ('21.4.21.)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후 지역신보 방문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신보 방문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 ('21.4.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서류 간소화	■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서류 제출	■ 개별적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동의시 민간신용평가사 등이 보유한 정보 활용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 ('21.4.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신청 및 약정시 소진공 방문	■ 소진공 방문없이 정책자금 대출 진행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 ('21.4.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도입	■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불가	■ 아이디어 탈취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음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공포·시행」보도자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4.2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자들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않았음	■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사실을 특허청 홈페이지 및 언론기관 등에 공표 가능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공포·시행」보도자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4.2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 신청대상요건 •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신청대상요건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으로 확대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추가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일괄심사 보도자료(예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20.12.8.)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243)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 (대상주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 특허, 실용신안 대상	■ (대상주체)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 ■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 특허, 실용신안 대상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누구든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출원 하면 수수료 50%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1. 상반기)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공개	■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1.4.1.)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	■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다른 파일 형식 (예: 3차원(3D) 입체파일→2차원(2D) 파일, 2차원(2D) 파일 →3차원(3D) 입체파일)으로 제출 가능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디자인 출원 쉽게 바뀐다! 보도자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9.1.)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 글자체 폰트파일 개발·제작한 후 파일을 기초로 별도 도면을 추가 작성이 요구됨	■ 글자체 폰트파일 개발·제작한 후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 허용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디자인 출원 쉽게 바뀐다! 보도자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9.1.)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을 기재할 수 없음	■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을 기재 허용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디자인 출원 쉽게 바뀐다! 보도자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9.1.)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 의류, 패션잡화류, 사무용품 (2,5,19류) 품목에 대해서만 일부심사가 가능	■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제1,3,9,11류) 품목에서도 일부심사등록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12.1.)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정부에서 자격증 발급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 수행 •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수의사법 ('21.8.28.)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신 설)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 시행 - 대상농가 ①5만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 ②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	가축전염병예방법 ('21.1.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① (신설) ■ ②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가계동향조사 활용	■ ①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②기준중위소득 통계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 등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가갑니다 ' 보도자료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자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1.1.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원	■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장애인연금 보도자료	**장애인연금법** ('21.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
기초연금	■ 기초연금 지급 • (소득하위 40% 이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기초연금 월 최대 257,560원 지급	■ 기초연금 지급 • (소득하위 70%이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기초연금법** ('21.1.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6)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 권역책임의료기관 12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29개소 ■ 필수의료 협력분야 - 퇴원환자 연계 - 중증응급질환 협력	■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 필수의료 협력분야 - 퇴원환자 연계 - 중증응급질환 협력 - 감염 및 환자 안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3)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청년저축계좌 신설('20.4.1) • '20년 4월, '20년 7월 총 2회 모집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21~) • '21년 총 4회 모집(변동가능) ☞ (참고) 희망·내일키움통장 누리집 "hopegrowing.com"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4,000명 대상으로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바우처 단가 13,500원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7,000명 대상으로 월 44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공 ※ 바우처 단가 13,350원	■ (주간활동) 바우처 대상자 9,000명으로 확대 ※ 바우처 단가 13,500원 → 14,020원으로 인상 ■ (방과후활동) 바우처 대상자 10,000명으로 확대 ※ 바우처 단가 13,350원 → 14,020원으로 인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공공 책임 미흡 •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 및 복귀하는 경우,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공적 판단 없이 보호 결정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 등을 민간에서 수행하여,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 강제력 행사에 한계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 및 상담 등 초기대응 업무 직접 수행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보도자료	**아동복지법** ('20.10.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및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419, 338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 시범보건소: 21개 보건소	■ 시범보건소: 50개 보건소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2월말 배포 예정)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21.1.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 (대상자) 43만명 ■ (신규 댁내장비) 10만대	■ (대상자) 50만명 ■ (신규 댁내장비) 20만대	**노인복지법** ('20.6.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기술 개발 ■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 실증 ■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등 6개	■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 9개 평가대상 추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의료기기 규제혁신 보도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20.11.10.)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1)
혁신의료기술 평가 질병군	■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재난적 질환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환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술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의료기기 규제혁신 보도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20.11.10.)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 (희귀질환) 총 1,078개 • (중증난치질환) 총 207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 (희귀질환) 원추각막 등 68개 질환 추가 지정, 총 1,146개 • (중증난치질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추가 지정, 총 208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21.1.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과 협력 병·의원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실시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본사업 -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경우 협력기관이 아니어도 수가 적용 ■ 2단계 시범사업 추진 - 진료의뢰료 수가 차등 - 비수도권 동일 시·도내 의뢰가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020-221호)** ('20.10.8.)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20.11.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을 면제	■ 일반건강검진 결과 추가 진료, 검사 시 본인부담 면제되는 질환의 범위에 "결핵" 추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020-163호)** ('21.1.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는 필수 급여, 그 외는 비급여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등까지 건강 보험 적용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21년)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	■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 1차(4~6개월) - 2차(9~12개월) - 3차(9~12개월) - 4차(18~24개월) - 5차(42~48개월) - 6차(54~60개월) - 7차(66~71개월)	■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 1차(생후 14일~35일) - 2차(4~6개월) - 3차(9~12개월) - 4차(9~12개월) - 5차(18~24개월) - 6차(42~48개월) - 7차(54~60개월) - 8차(66~71개월)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21.1.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정신건강(우울증) 검진주기 유연화	■ 정신건강(우울증) 검진주기 변경 - 만 20, 30, 40, 50, 60, 70세 각 1회	■ 정신건강(우울증) 검진주기 변경 - 만 20, 30, 40, 50, 60, 70세 개시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21.1.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폐결핵 질환의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해당질환 : 고혈압, 당뇨	■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해당질환 : 고혈압, 당뇨, 폐결핵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21.1.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비급여 예방진료 • 불소도포 : 관행수가 평균 3만원	■ 충치예방관리료 신설 • 불소도포 : 약 1,500원(본인부담금 기준) *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만 적용되며, 수가 적정성 평가하여 정규수가 전환 및 확대 추진예정	보건의료기본법 ('21. 상반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044-202-2843)
정신건강 사례관리전문인력 및 자살예방 인력 확충	■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 1,370명('17년~'20년) 기 충원 및 자살예방 전담인력 207명 배치	■ 정신건강사례관리전문인력 100명 및 자살예방 전담인력 107명 신규충원	('21.1.1.~12.3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2)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시행	■ 7개 시·도*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	■ 12개 시도*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시행 * 인천,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등 5개 추가	('21.1.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서비스 이용자 91천명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 2천명, 1,000원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미지급	■ 서비스 이용자 99천명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 3천명, 1,500원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미만, 시설이용자 등 제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1.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신 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참고)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21.1.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고용보험법 ('20.12.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부담기초액: 1,078,000원 • 고용의무이행률 - 3/4 이상 : 1,078,000원 - 1/2~3/4: 1,142,680원 - 1/4~1/2: 1,293,600원 - 1/4 미만: 1,509,200원 - 미 고 용: 1,795,310원	■ 부담기초액: 1,094,000원 • 고용의무이행률 - 3/4 이상 : 1,094,000원 - 1/2~3/4: 1,159,640원 - 1/4~1/2: 1,312,800원 - 1/4 미만: 1,531,600원 - 미 고 용: 1,822,480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 고시) ('21.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 '20년부터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	■ '21.1월까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2조의2 ('21.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	■ '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 ☞ (참고) 정책자료〉정책자료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 내용 및 지원 방안, '20. 12월)	근로기준법 ('21. 1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5)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MSDS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별도 명령시 제출) ■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	■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 ■ 영업비밀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MSDS 제도개선('20. 12월)	산업안전보건법 ('21.1.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예술인 : 지원 없음 ■ 근로자 :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15만원 미만자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근로자 :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기가입자) 지원 중단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1.1.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9만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21.1.1.)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2-7783)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신 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신설 • (자격)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 • (대상) 6,300명 • (지원) 월 5만원 • (방식) 교통바우처 방식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21.4.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할 경우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 없음	■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 ('21.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 시 사업주에게 1호 인센티브(월10만원) 추가 지급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부터 세 번째 부여한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추가로 월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사업주지원금 안내〉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1. 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해당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인건비·운영비 지원 비율 판단	■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지원 • 피보험자의 손자녀 등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시킴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 59조** ('21.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최저임금액 인상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95,31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20%, 복리후생비 5%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2,4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1.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97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녀양육비" 융자종목 신설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융자종목(총8종):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융자종목(총9종):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 (http://www.workdream.net)	**근로복지 사업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1. 1월 중)
	■ 저소득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복지 기본법** ('20.12.8.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신 설)	■ 대표이사의 의무 신설 •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인 주식회사가 대상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21.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44-202-75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 사유 제한 없이 적용 제외 신청 허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 신규 적용 ■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 ('21.7.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5인 미만 '21.7.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4)
산재 직업 재활급여 신청기간 확대	■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 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1년	■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 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3년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2.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7709)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인원 • 연간 6,177명 ■ 새일여성인턴 1인당 지원금 • (기업) 인턴 지원금 240만원 *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80만원 • (여성) 취업장려금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3개월 시점 지급	■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인원 • 연간 7,777명 (+1,600명) ■ 새일여성인턴 1인당 지원금 • (기업) 인턴 지원금 24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시점 지급 • (여성) 근속장려금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시점 지급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1년 예산('20.12.3.)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21. 1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02-2100-6208)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시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에게는 주거급여 지급되지 않고 가구주인 부모만 지급	■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격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1.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과 (044-201-3358)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 각 의료기관별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 (신설) ■ (신설)	■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하여(1회) 승인 ■ 임상시험 승인부터 결과까지 투명한 정보 공개 플랫폼 마련 ■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및 특수실험실 건축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 (043-719-5410)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 전국 228개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 연중 식품위생법 위반, 식중독 발생이 있는 등 위생관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실시 ■ 50명 이상이나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 합동 조사	■ 신규 센터 6개소 추가로 모든 지역 센터 설치(전국 234개소) ■ 매년 5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주관하여 연 1회 전수점검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도 합동 조사가 가능	식품위생법 ('13.5.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 안전정책과 (043-719-2257) 식중독예방과 (043-719-2105)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실시	(신 설)	■ 법원으로부터 마약류 사범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이수 의무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2.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3)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 검사건수: 약 1,600건 ■ 검사대상 :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 식품 위주 검사	■ 검사건수 확대(3,000건) ■ 검사대상 다양화 :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 포함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6)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신 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 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1.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원 TF** (043-719-3792)
규제과학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신 설)	■ 규제과학 인재양성 -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기준·도구·기술을 개발·연구하는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신진연구자, 현장전문가) 600명 양성 목표 - 5개 대학에 각 5억원 이상씩 5년간 지원	('21. 상반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043-719-4167)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 홑벌이 가구 범위 •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1.1.1.)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12)

질병관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 보건소 *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 한시 확대 운영 ('20.6.22.~12.31.)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1.1.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 확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거동불편 장애인	**결핵예방법** ('21. 1월)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1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 1,014개 질환	■ 1,078개 질환으로 확대 ☞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관리법** ('21. 1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5)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확대	■ 126개 극희귀질환	■ 175개 극희귀질환으로 확대 ☞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지원사업〉 유전자진단지원사업	**희귀질환관리법** ('21. 1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5)

질병관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범위 확대	■ 부양 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 ☞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온라인신청	희귀질환관리법 ('21. 9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1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 161개 음압병실	■ 16개 시도 39개 의료기관 244개 음압병실(83개 음압병실 추가)	('20. 12월부터)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11)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 간이형태(음압텐트, 컨테이너 등)의 선별진료소	■ 건물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전환 (59개 보건소)	('21. 1월)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21)
감염병환자의 동선 등 공개시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	■ 법률 정비	■ 전국민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 ☞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민원정보공개〉전자공청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예방법 ('20.12.30.)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10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만, 한 개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공공공사 부터 상대시장 진출 허용 ※ 민간공사는 '22년부터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 건설업역 개편 설명자료	건설산업 기본법 ('21.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 - 구조·설비 포함 대부분의 설계도서 제출 ■ 건축심의 대상 -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유사위원회 간 중복 심의	■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 -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 ■ 건축심의 대상 -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금지 및 유사위원회 간 공동 심의 유도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21. 하반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1. 4월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신 설)	■ 여객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철도안전을 저감시키는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신고 ☞ (참고) https://railsafety.or.kr〉자율보고〉 제도안내	철도안전법 ('21.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 안전과 (044-201-4612)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매출액의 100분의1 이내의 과징금 부과	■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날부터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과징금 부과 ■ (신설) 결함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요건(대통령령)에 해당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신설)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관리법 ('21.2.5.시행)	자동차관리법 ('21.2.5.)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시숲의 목적, 정의		■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 보건·휴양·정서 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과 수목,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은 생활권 및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생활환경과 경관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과 수목, 가로수는 도로 등과 주변지역에서 조성·관리하는 수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6.10.)
		☞ (참고) 산림청누리집〉보도자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보도자료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도시숲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		■ 10년 주기로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지자체장은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6.10.)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